#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31] [환경부령 제543호, 2014.1.29, 일부개정]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 - 201 - 700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수질오염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9>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이하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한다)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이후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년간 연속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종기(終期)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같을 것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③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

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명세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명세 및 측정기기 부착 명세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1.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제17조(조치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사업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2.0, 제2종사업장은 1.5, 제3종사업장은 1.0, 제4종사업장은 0.7, 제5종사업장은 0.4로 할 것.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부과계수는 2.0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연구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5.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6.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정보

##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제1절 총칙

**제22조(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 퇴적물 측정망
8. 생물 측정망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제23조(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2. 도심하천 측정망
3.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②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상시측정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2.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측정망을 최초로 설치하는 날 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그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망 운영기관
5. 측정자료의 확인방법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결과와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법 제5조에 따른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제26조의2(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1.29>]

**제26조의3(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조사할 하천·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제26조의2에서 이동 <2014.1.29>]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상수원 호소
2. 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시점(始點)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1.29]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12.1.19>
2. 삭제<2012.1.19>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오수·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9>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1. 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정도
2.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3. 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③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29조(낚시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5, 2014.1.29>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 제2절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

**제32조(오염원 등의 조사방법)**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3절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2]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영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7.5>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 - 디클로로에틸렌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1.19>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性狀)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3.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폐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제41조제3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증·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다.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

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제목개정 2014.1.29]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19, 2014.1.2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5>

1.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3.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4.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제51조(개선명령 등)** ① 시·도시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9>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영 제40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이하 "폐수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3. 영 제40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③ 사업자등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사업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1.19>

④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9>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제54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은 시·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1. 배출구별 수질오염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확정배출량이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① 시·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50조에 따라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① 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시·도지사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개선완료일)** ①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른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41조 각 호의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 등)** ①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5>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12.7.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2.7.5>

[제목개정 2012.7.5]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2.0, 제2종사업장은 1.5, 제3종사업장은 1.0, 제4종사업장은 0.7, 제5종사업장은 0.4로 할 것

② 삭제<2010.4.2>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4.2>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9]
[시행일 : 2014.7.31] 제61조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1.29>

**제63조** 삭제 <2014.1.29>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제2절 폐수종말처리시설

**제65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9>
③ 제2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영 제66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66조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6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부담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3. 사업지역(변경되는 사업지가 같은 읍, 면 또는 동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7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제66조 각 호의 사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68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9>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0조(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67조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7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72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2012.7.20>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0.4.2>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2>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4.2, 2014.1.29>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② 법 제5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9>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9>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은 설치·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운영기준과 설치·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지사, 관계 시·군·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9>

1.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1.29]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86조(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 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제87조(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제88조(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관이나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9, 2014.1.29>

1. 사업계획서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 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9>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등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폐수처리업의 등록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9>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9>

⑥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1.29>

1. 사업장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대표자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폐수의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5.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⑦ 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중 영 제79조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2.1.19>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62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1.29>

②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1과 같다.<개정 2014.1.29>
③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9, 2014.1.29>
1.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제9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는 폐수수탁처리업은 2.0, 폐수재이용업은 0.5로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변경허가 또는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2.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3.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9]
[시행일 : 2014.7.31] 제92조

## 제7장 보 칙

**제93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67조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환경기술인 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1.2.9>
1. 최초교육
환경기술인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환경기술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2.9>
1. 환경기술인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기술요원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이 관련 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인과정

2.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7.5>

**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이나 기술요원을 고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1.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 수질오염원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점검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 수질오염원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적정성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처리량·재고량 등 수탁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의2. 측정기기의 운영상황 확인 및 운영관리기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테이프·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51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제1항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이 되는 종말처리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이온농도
2. 영 별표 7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보고)**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12.1.19>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13 제1호가목4)에 따른 특례지역 중 농공단지 내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3.9.5>

[본조신설 2009.6.30]

## 제8장 삭제 <2013.9.5>

**제108조** 삭제 <2013.9.5>

**부칙** <제543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3조**(폐수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가동개시"가 "가동시작"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발신 (인)

제 목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

| 할당된 오염부하량 및 지정된 배출량 이행시기 | 년 월 일 부터 | |
|---|---|---|
|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 오염부하량 할당량 | 배출량 지정량 |
| | (kg/일) | (L/일) |
|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 오염부하량 할당량 | 배출량 지정량 |
| | (kg/일) | (L/일) |
|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 오염부하량 할당량 | 배출량 지정량 |
| | (kg/일) | (L/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제1항과 제2항에 따라

□ 오염부하량 할당
내역을 통보합니다.

□ 배출량 지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1] <개정 2012.1.19>

기타 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 시설구분 | 대상 | 규모 |
|---|---|---|
| 1. 수산물 양식시설 |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 | 면허대상 모두 |
| |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養鰻場) 또는 일반양어장 |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다.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
| 3.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것 |
| |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 |

| | | |
|---|---|---|
| | | 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 1대 이상일 것 |
|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1대 이상일 것 |
|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폐수발생량이 1일 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 |
|---|---|---|
| | 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
| |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대 이상일 것 |
| 7.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비고

1.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개정 2013.9.5>

##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유기용제류
20. 유류(동·식물성을 포함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황과 그 화합물
30. 유기인 화합물
31. 6가크롬 화합물
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4.7>

<table>
<tr><td>할당번호 및 지정번호<br>제 호</td><td colspan="3">배출량 추가 지정서</td></tr>
<tr><td colspan="4">받음 발신 (인)</td></tr>
<tr><td>① 사업장명</td><td></td><td>② 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③ 대 표 자</td><td></td><td>④ 생년월일</td><td></td></tr>
<tr><td>⑤ 사업장 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⑥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td><td colspan="3"></td></tr>
<tr><td>최종방류구<br>분류기호 및 위치</td><td colspan="3">추가 배출량 지정량</td></tr>
<tr><td></td><td colspan="3">(L/일)</td></tr>
<tr><td>최종방류구<br>분류기호 및 위치</td><td colspan="3">추가 배출량 지정량</td></tr>
<tr><td></td><td colspan="3">(L/일)</td></tr>
<tr><td>최종방류구<br>분류기호 및 위치</td><td colspan="3">추가 배출량 지정량</td></tr>
<tr><td></td><td colspan="3">(L/일)</td></tr>
<tr><td colspan="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출량을 지정합니다.</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5. 벤젠
36. 사염화탄소
37. 디클로로메탄
38. 1, 1-디클로로에틸렌
39. 1, 2-디클로로에탄
40. 클로로포름
41.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42. 1,4-다이옥산
43.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4. 염화비닐
45. 아크릴로니트릴
46. 브로모포름
47. 퍼클로레이트
48. 아크릴아미드
49. 나프탈렌
50. 폼알데하이드
51.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2. 톨루엔
53. 자일렌

[별표 3] <개정 2013.9.5>

##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table>
<tr><td>허가번호<br>또는<br>신고번호<br><br>제 호</td><td colspan="2">□ 조 치<br>□ 조업정지<br>□ 폐 쇄</td><td>명령 이행보고서</td><td>처리기간<br><br>4 일<br>(검사기간<br>제외)</td></tr>
<tr><td rowspan="3">보<br>고<br>인</td><td>① 상호(사업장 명칭)</td><td colspan="3"></td></tr>
<tr><td>② 성명(대표자)</td><td colspan="3"></td></tr>
<tr><td>③ 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
<tr><td colspan="2">④ 사업장소재지</td><td colspan="3">(전화: )</td></tr>
<tr><td colspan="2">⑤ 사업종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⑥ 오수·폐수시설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⑦ 개선(조치·조업<br>중지·폐쇄)사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⑧ 개선(조치·조업<br>중지·폐쇄) 이행일</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조 치<br>□조업정지<br>□폐 쇄 명령을<br>제1항 및 제4항에 따른<br>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br><br>년 월 일<br><br>보고인 (서명 또는 인)<br><br>귀하</td></tr>
<tr><td colspan="4">※ 구비서류: 없음</td><td>수수료<br>없음</td></tr>
</table>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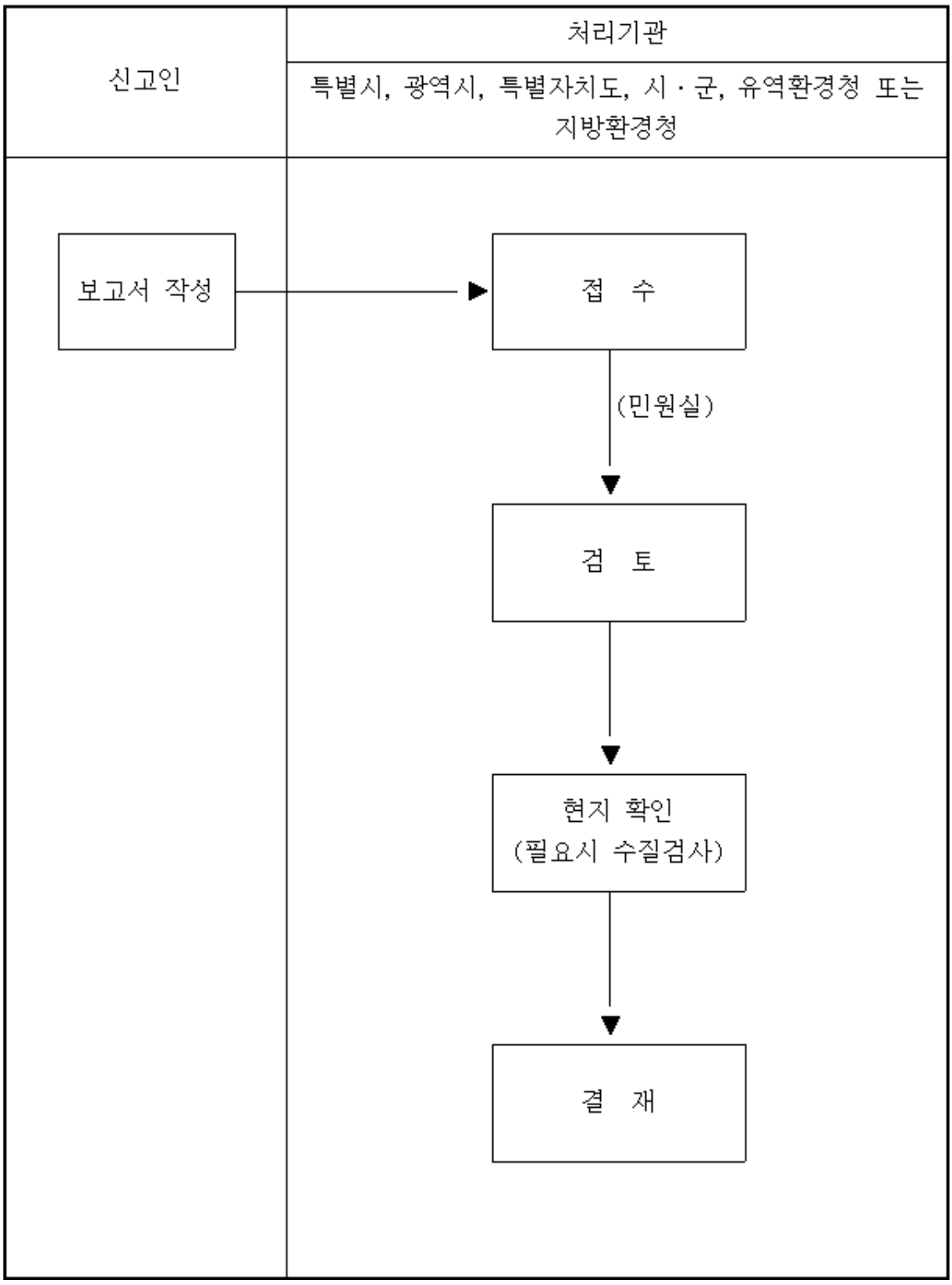

[별표 4] <개정 2011.2.9>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 | | | | | | | | | |
|---|---|---|---|---|---|---|---|---|---|---|
| 발행번호<br>회계연도 | | | | | | | 납기일자<br>고지일자 | | | |
| 납입자 | 성명·상호<br>납입자번호<br>주 소 | | | | | 세입징수관명<br>국고계좌: | | | | |
| 회 계 | | 소 관 | | 관 | | 항 | | 목 | | |
| 과 목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납기 내 금액 | | 징수금 산출근거 | | |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 납기 후 금액<br>(납 기) | | | | | | | | | | |

세입징수관: 직 인

170㎜×105㎜(전산용지)

(제2쪽)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 | | | | | | | | | | |
|---|---|---|---|---|---|---|---|---|---|---|
| 발행번호<br>회계연도 | | | | | | | 납기일자<br>고지일자 | | | |
| 납입자 | 성명·상호<br>납입자번호<br>주 소 | | | | | 세입징수관명<br>국고계좌: | | | | |
| 회 계 | | 소 관 | | 관 | | 항 | | 목 | | |
| 과 목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납기 내 금액 | | 징수금 산출근거 | | |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 납기 후 금액<br>(납 기)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영수인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관: 직 인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폐수배출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 포함 또는 제외시설 |
|---|---|---|
| 1) 석탄 광업시설 | 051 |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br>○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 | | |
|---|---|---|
| | |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br>○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 06 |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 07 |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br>○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br>○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4)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 101<br>102 |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br>○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 103 |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3쪽)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 | | | | | | | | |
|---|---|---|---|---|---|---|---|---|
| 발행번호<br>회계연도 | | | | | 납기일자<br>고지일자 | | | |
| 납입자 | 성명·상호<br>납입자번호<br>주 소 | | | 세입징수관명<br>국고계좌: | | | | |
| 회 계 | | 소 관 | | 관 | | 항 | | 목 |
| 과 목 | | | | 년 월 | | | | |

| | |
|---|---|
| 납기 내 금액 | |
| 가 산 금 | |
| 납기 후 금액<br>(납 기) | |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 영수인 |
|---|
| |

(제4쪽)

납 부 서(한국은행용)

| | | | | | | | | |
|---|---|---|---|---|---|---|---|---|
| 발행번호<br>회계연도 | | | | | 납기일자<br>고지일자 | | | |
| 납입자 | 성명·상호<br>납입자번호<br>주 소 | | | 세입징수관명<br>국고계좌: | | | | |
| 회 계 | | 소 관 | | 관 | | 항 | | 목 |
| 과 목 | | | | 년 월 | | | | |

| | |
|---|---|
| 납기 내 금액 | |
| 가 산 금 | |
| 납기 후 금액<br>(납 기) | |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 영수인 |
|---|
| |

| | | |
|---|---|---|
|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 104 | |
|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 105 |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
|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 1061 | |
|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 1062 | |
|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 108 | |
| 11) 설탕 제조시설 | 1072 | |
|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 1074 | |
|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 1071<br>1073<br>1079 |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br>○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br>○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 |
|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 111 | |
|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 112 | |
| 16) 담배 제조시설 | 12 | |
| 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 131<br>132<br>133 |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134 | |
|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 139 | |
|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 142<br>151 | |
|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 152 | |

| | | |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 16 | |
|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17 | |
|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 18<br>581<br>592<br>733 |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 191 |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192 |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br>○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br>○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첨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
|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 20111 |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 20119 |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
|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 20112 | |
|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20119 |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

| | | |
|---|---|---|
| | |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은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
|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 2012 |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br>○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 20121 | ○ 35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20132 |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202 | |
|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 20301 |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20302<br>20303 |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 21 |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 2041 | |
|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2042 | |
|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 20431<br>20432 | |
| 41) 화장품 제조시설 | 20433 | |
|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 20434 |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 | 266 |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
| 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 20491 | |
|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 20492 | |
|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0499 |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
|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 20493 | |
|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 20494 | |
|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20499 |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
|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 205 | |
|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22 | |
|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231 | |
|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 232 | |
|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233 |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br>○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 239 |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55) 1차 철강 제조시설 | 241 |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한다. |
| 56) 합금철 제조시설 | 24113 | |
|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 2421 |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

| | | |
|---|---|---|
| | | 포함한다. |
|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 24221 | |
|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4222 | |
|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4229 | |
|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 2429 | |
| 62) 금속주조시설 | 243 | |
| 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 25 |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283 | |
|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 282 | |
|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 284 | |
|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 261<br>262 |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 265 | |
|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 32<br>33 |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70) 화력발전시설 | 35113 |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 71) 수도사업시설 | 360 |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 |

| | | |
|---|---|---|
| | | 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br>○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 360 | ○ 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br>○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 46313<br>47213 |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 861 | ○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
|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 381<br>382 |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 9691 |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
|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 | 공통시설 |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

| | | |
|---|---|---|
| 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 | 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 공통시설 |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br>○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
|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 공통시설 |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br>○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
| 80) 도금시설 | 공통시설 |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 공통시설 |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br>○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 |

| | | |
|---|---|---|
| | | 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洗輪)시설은 제외한다. |
|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 공통시설 | ○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 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瀑氣)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
   바. 안정조

[별지 제5호서식]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

1. 일반 현황

ㅇ 업 소 명 :

ㅇ 소 재 지 :

ㅇ 대 표 자 :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

| 오염물질명 | 배출농도(㎎/L) | 할당오염부하량(kg/일) | 지정배출량(L/일) | 일일유량(L/일) | 지역별부과계수 | 배출기간(일) |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
| | | | | | | | |

ㅇ 시료채취일: ㅇ 개선완료일: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수질오염물질 1㎏당 연도별 부과단가: _____원(A)

나. 초과오염배출량(일일초과오염배출량×배출기간): _____kg(B)

일일초과오염배출량: _____kg

※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일일유량×배출농도×$10^{-6}$ - 할당 오염부하량)값과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6}$)]값 중 큰 값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_____(C)

라. 지역별 부과계수: _____(D)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_____(E)

바. 감액: _____(F)

사. 오염총량초과부과금=(A)×(B)×(C)×(D)×(E)-(F) _____원

가산금: 오염총량초과부과금×5/100 _____원

납기후 부과금: 오염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 _____원

※ 비고: 바목의 감액이란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 중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유공(有孔)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 와류(渦流)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table>
<tr><td colspan="3">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td><td>처리기간<br>10 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① 상호(사업장 명칭)</td><td colspan="2"></td></tr>
<tr><td>② 성 명(대 표 자)</td><td colspan="2"></td></tr>
<tr><td>③ 사 업 장 소 재 지</td><td colspan="2">(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4">당 초 부 과 명 세</td></tr>
<tr><td>④ 납부통지서 수 령 일</td><td>⑤ 납부통지서 코 드 번 호</td><td>⑥ 부과일시</td><td>⑦ 부과금액</td><td>⑧ 납부기한</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⑨ 환급금 수령 계 좌 번 호</td><td colspan="4"></td></tr>
<tr><td>⑩ 조정신청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br><br>년 월 일<br><br>신청인 (서명 또는 인)<br><br>귀하</td></tr>
<tr><td colspan="3">※ 구비서류: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td><td>수수료<br>없 음</td></tr>
</table>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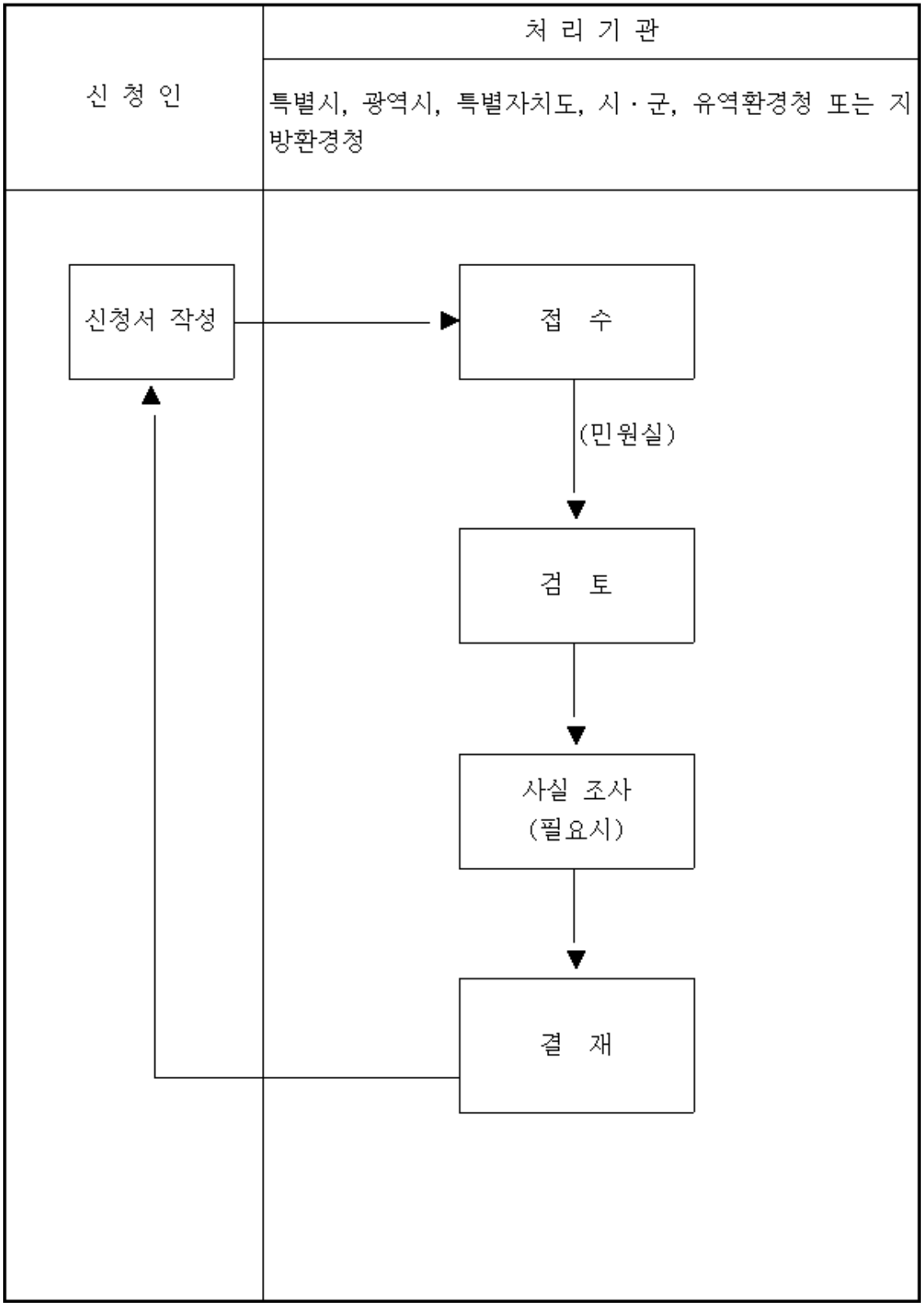

[별표 7] <개정 2012.1.19>

##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가. 평균수질 $= e^{(\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나. $\text{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cdots}{\text{측정횟수}}$

다. $\text{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cdots}{\text{측정횟수} - 1}$

비고 :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으로 표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시행일자 발신 (인)
받 음
제 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부과 및 환급 통지서

□조정부과
□환 급 명세

| ① 계 | ② 부과금 | ③ 미 수 부과금 | ④ □조정 □환급 부과금 | ⑤ □조정부과 □환 급 결정일자 | ⑥ □수급 □환급 은행 및 계좌번호 | ⑦ 기타 |
|---|---|---|---|---|---|---|
| | | | | | | |

⑧ □조정부과
□환 급 사유

⑨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 조정부과 □ 환 급 함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받음란에는 □조정부과 □환급 대상사업자(납부의무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2. □조정부과 □환급 사유란에는 □조정부과 □환급 를 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오염총량초과부과금 과다납입금 환급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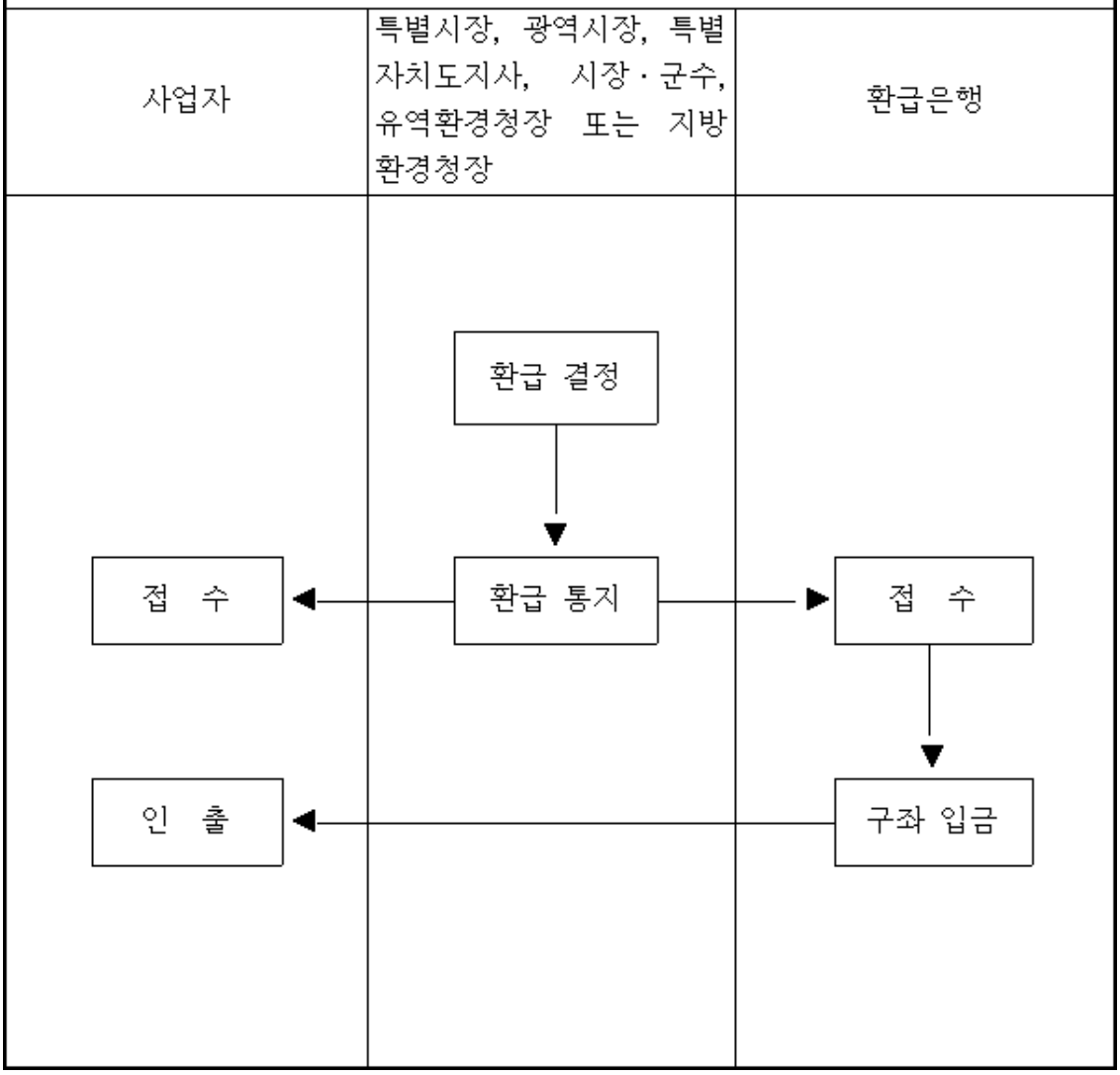

[별표 8] <개정 2012.1.19>

##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text{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기준배출수질 = $e^{(\text{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 $\text{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cdots}{\text{측정횟수}}$

· $\text{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cdots}{\text{측정횟수} - 1}}$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배출수질 = (1-b)×Xa+b×X(a+1)로 산정한다.

· a는 1+0.95×(측정횟수-1)의 정수부분, b는 1+0.95×(측정횟수-1)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 X1, X2, X3, …, Xa, …, X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 Xa는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X(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 | | 처리기간 5 일 |
|---|---|---|---|
| 납부의무자 | ① 업소명 | | |
| | ② 대표자 | | |
| | ③ 주소 또는 거소 | (전화번호 : ) | |
| | ④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 ⑤ 징수유예 신청사유 | | | |

| ⑥ 부과일자 | ⑦ 부과기간 | ⑧ 부과금액 | ⑨ 유예신청기간 | ⑩ 유예신청금액 |
|---|---|---|---|---|
| | | | | |

⑪ 분할납부신청사항

| 분납일자 | | 분납금액 | 분납일자 | | 분납금액 | 분납일자 | | 분납금액 |
|---|---|---|---|---|---|---|---|---|
| 1 차 | | | 5 차 | | | 9 차 | | |
| 2 차 | | | 6 차 | | | 10 차 | | |
| 3 차 | | | 7 차 | | | 11 차 | | |
| 4 차 | | | 8 차 | | | 12 차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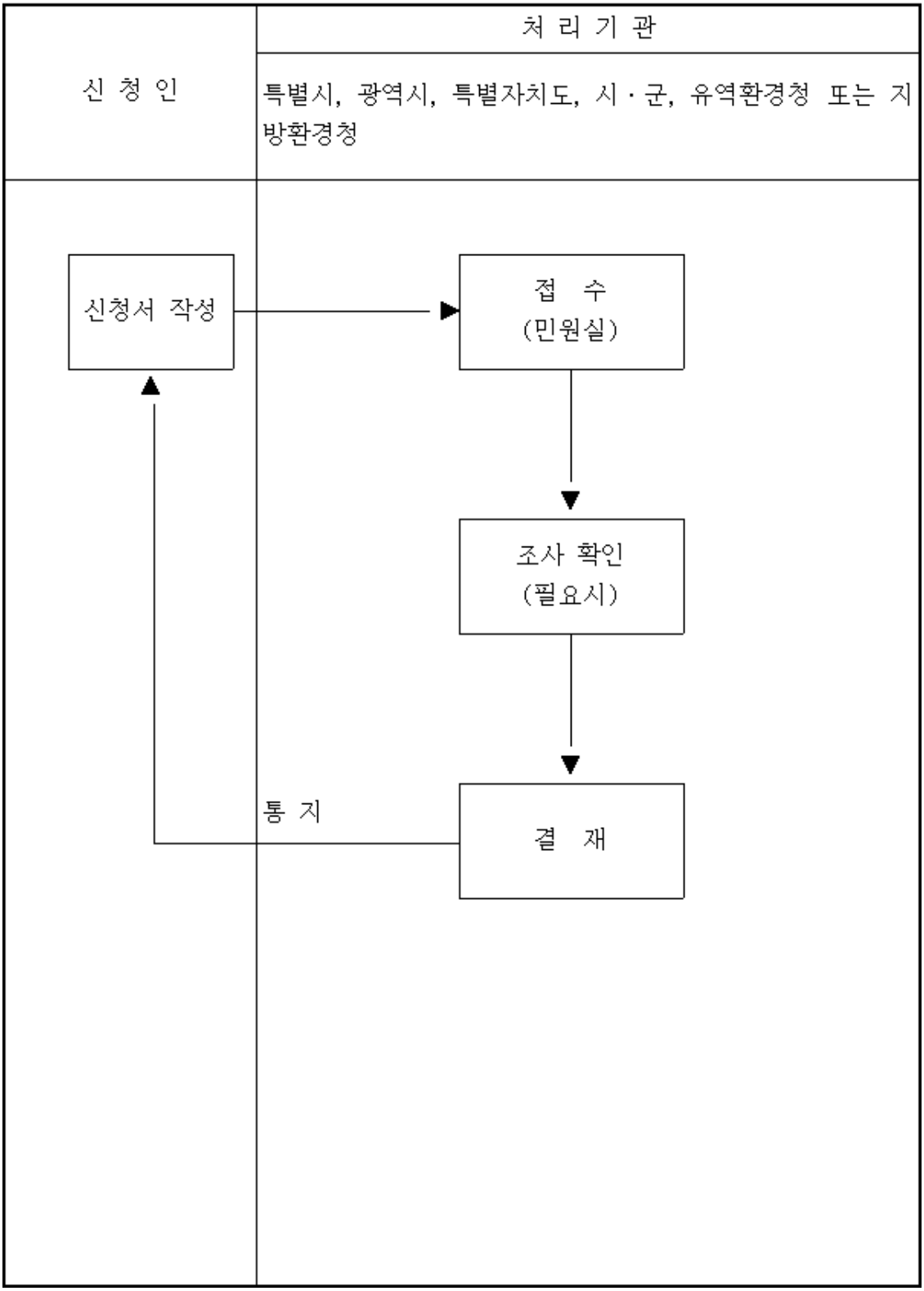

[별표 9]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추가 지정 배출량(L/일) = (할당 오염부하량/실측평균수질) × $10^6$

비고 : 1. 실측평균수질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로서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통행제한 도로·구간 통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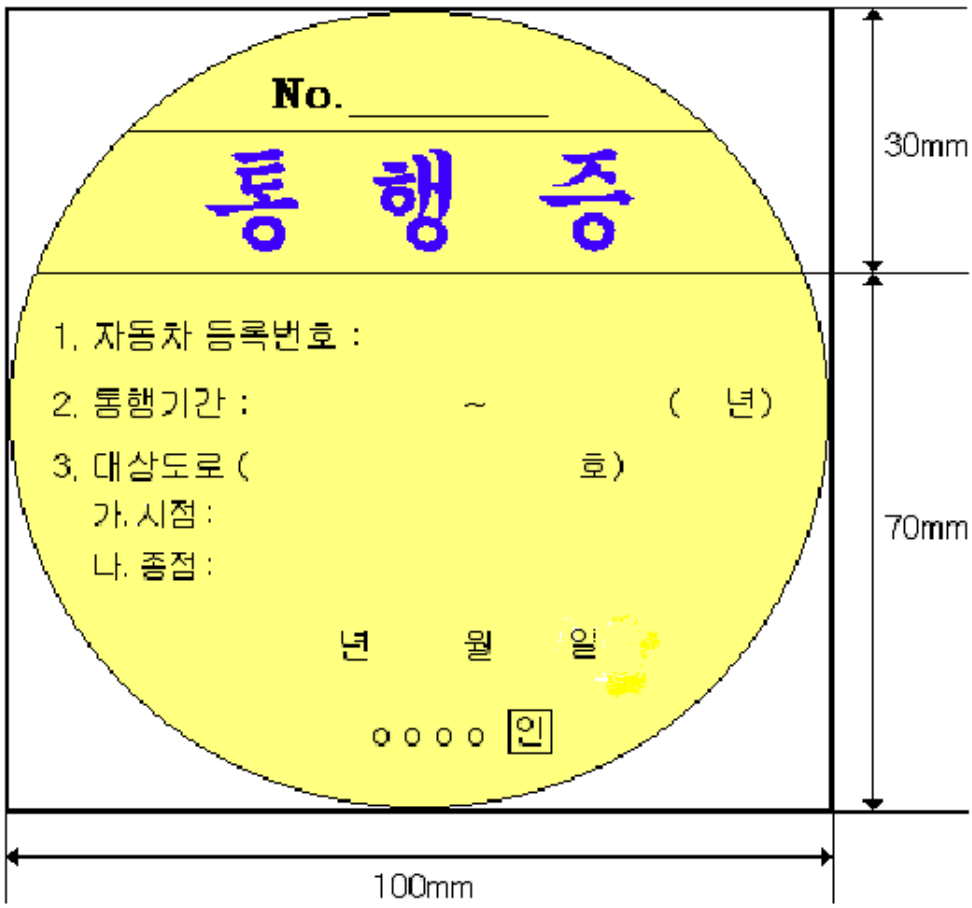


비고: 1.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합니다.
2. "통행증" 글씨는 청색으로 하고 그 밖의 글씨는 검은색으로 합니다.

100㎜×100㎜(부착용 특수가공지 70g/㎡)

[별표 10] <개정 2013.9.5>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1. 방류수 수질기준

| 구 분 |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 | | | | | | | | |
|---|---|---|---|---|---|---|---|---|---|---|
| | 2010.12.31.까지 | 2011.1.1.부터 2011.12.31.까지 | 2012.1.1.부터 2012.12.31.까지 | | | | 2013.1.1. 이후 | | | |
| | | | Ⅰ지역 | Ⅱ지역 | Ⅲ지역 | Ⅳ지역 | Ⅰ지역 | Ⅱ지역 | Ⅲ지역 | Ⅳ지역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mg/L)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mg/L)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20(40) 이하 | 2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 부유물질(SS)(mg/L)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 총질소(T-N)(mg/L)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 총인(T-P)(mg/L) | 4(8) 이하 | 4(8) 이하 | 0.2(0.2) 이하 | 0.3(0.3) 이하 | 0.5(0.5) 이하 | 4(8) 이하 | 0.2(0.2) 이하 | 0.3(0.3) 이하 | 0.5(0.5) 이하 | 2(2) 이하 |
| 총대장균군수(개/mL)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3,000) | 3,000 (3,000) | 3,000 (3,000) | 3,000 (3,000) |
| 생태독성(TU) | -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 통행증발급신청서 | | | 처리기간<br>15일 |
|---|---|---|---|
| 신청인 | 성 명 | | |
| | 주 소 | | |
| 소유자 | 성 명 | | |
| | 주 소 | | |
| 자동차 | 종류(명칭) | | |
| | 등록번호 | | |
| | 용 도 | | |
| 차의 운행 | 통행기간 | | |
| | 대상도로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통행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습니다. | 수수료<br>없 음 |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적으십시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대상 지역

| 구 분 | 범 위 |
|---|---|
| Ⅰ지역 |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br>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br>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br>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 Ⅱ지역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 Ⅲ지역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
| Ⅳ지역 |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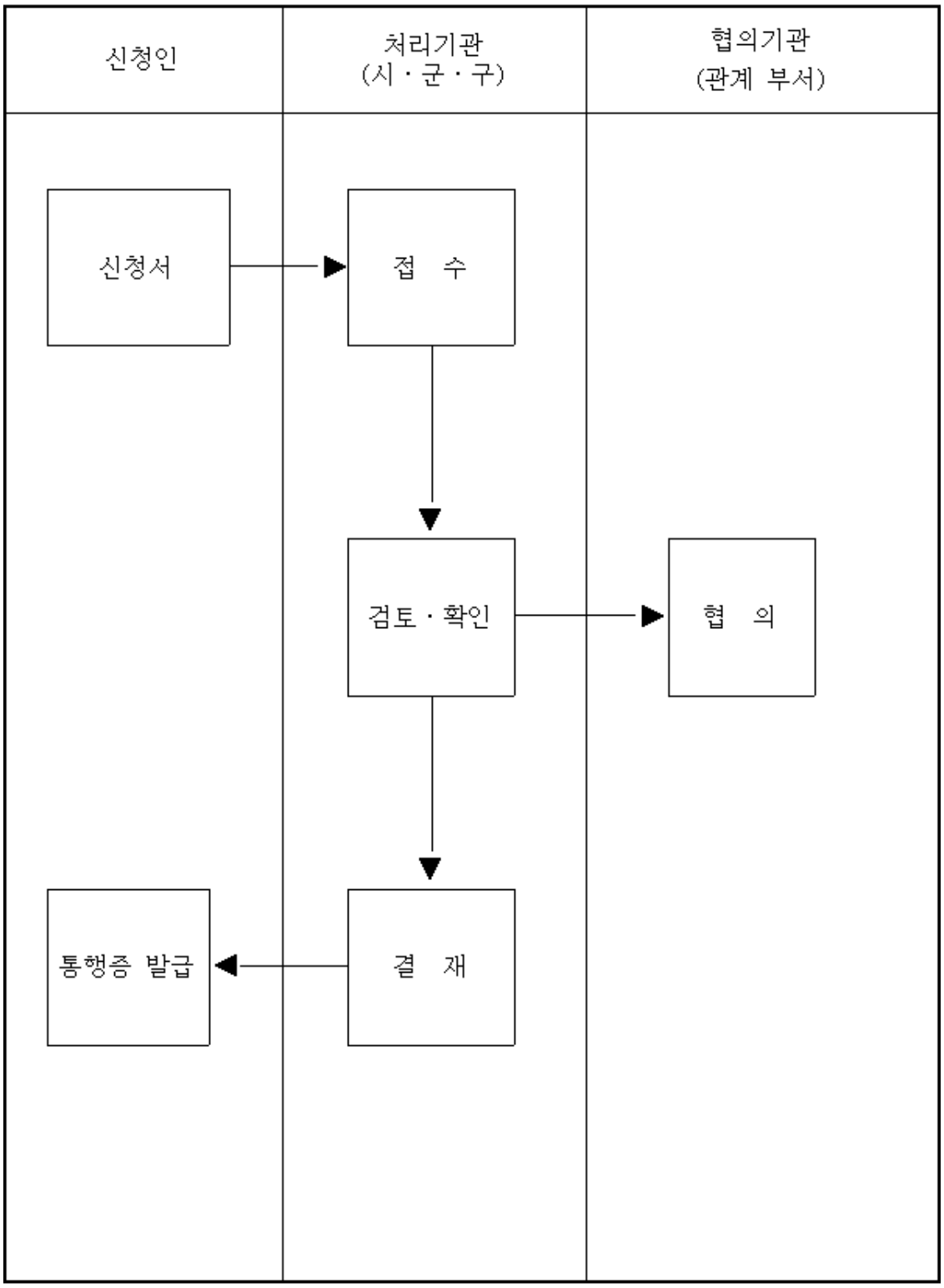


※ 통행기간이 끝난 때에는 통행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표 10의2] <신설 2014.1.29>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

1. 방제조치를 위하여 투입된 인력(특수 방제 인력 포함)에 대한 인건비·출장비 등 인력운영 비용
2. 방제조치에 사용된 방제 자재·약품 등 소모된 물품 비용
3.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5.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방제조치에 사용되기 직전의 현존 가액으로 한다.
6.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의 예인비·운항비 및 기계·기구·물품 등의 운반에 소요된 비용
7. 방제조치를 위하여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오염물질과 관련된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비고: 1.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계·기구 및 물품의 경우에는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특수 방제 인력"이란 수중장비 전문 다이버, 특수장비 조작 전문인력 등을 말한다.

[별표 11] <개정 2010.4.2>

통행제한 도로·구간(제27조제2항 관련)

| 상수원명 | 대상도로 | 구간 | 거리 |
|---|---|---|---|
| 팔당호 | 일반국도 제6호 |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팔당대교 입구)<br>- 경유: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용담대교 입구)<br>○종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 12km |
| | 일반국도 제45호 |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도마삼거리)<br>○종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팔당댐) | 7km |
| | 지방도 제337호 |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br>○종점: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 16.8km |
| | 국도 제45호 (북한강 강변) |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국도 제6호 합류점)<br>○종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국도 제46호 합류점) | 27.0km |
| 잠실 | 특별시도 제254호 (잠실철교) | ○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27<br>○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74 | 1.3km |
| | 특별시도 제278호 (올림픽대교) | ○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69<br>○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4 | 1.5km |
| | 일반국도 제43호 (천호대교) | ○시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2<br>○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0 | 1.2km |
| | 특별시도 제248호 (광진교) | ○시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88<br>○종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71 | 1.1km |
| 대청호 | 지방도 제509호 | ○시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6구삼거리)<br>○종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삼거리) | 2km |
| | 지방도 제32호 | ○시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하석교)<br>○종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삼거리) | 11.4km |
| | 지방도 | ○시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신흥사 입구) | 9km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9>

#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 신청인 | ① 성 명 | | | ② 생년월일 | | | |
|---|---|---|---|---|---|---|---|
| | ③ 주 소 | | | (전화번호: ) | | | |
| 신청 내용 | ④ 토지 소재지 | ⑤ 지번 | ⑥ 지목 | ⑦ 면적 (㎡) | 토지외의 물건 | | ⑩ 희망 가격 (백만원) |
| | | | | | ⑧ 종류 | ⑨ 등기 설정 여부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 | 1.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 1부<br>2. 오수·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br>3.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1부 |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br>2.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등기부 등본 1부<br>3.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합니다) 1부<br>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br>5. 지적도 1부 |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64g/㎡(재활용품)]

| | | | |
|---|---|---|---|
| | 제32호 | ○종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대청교) | |
| | 지방도 제629호 | ○시점: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삼거리<br>○종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검문소삼거리) | 19㎞ |
| | 지방도 제571호 | ○시점: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삼거리)<br>○종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남대문교) | 18㎞ |
| 보령호 | 지방도 제617호 | ○시점: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늑전교)<br>○종점: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도화담삼거리) | 9.8㎞ |
| | 군도 제1호 | ○시점: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동오리(화산교삼거리)<br>○종점: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늑전교삼거리) | 4.0㎞ |
| | 농어촌 도로 | ○시점: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용수리(댐)<br>○종점: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도화담삼거리) | 9.4㎞ |
| 용담호 (금강) | 지방도 제795호 (댐 인접) | ○시점: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정천면휴게소삼거리)<br>○종점: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용담댐삼거리) | 20.0㎞ |
| | 군도 제22호 (댐 인접) | ○시점: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용리(영강교)<br>○종점: 전북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지방도 제795호 합류점) | 5.5㎞ |
| 주암호 | 시도 제8호 | ○시점: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br>○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 25㎞ |
| | 일반국도 제15호 |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br>○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절산리(합수목교 삼거리) | 5.3㎞ |
| 동복호 | 군도 제21호 |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묘치삼거리)<br>○종점: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구산리(야사삼거리) | 11.7㎞ |
| | 군도 제4호 |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신기마을 입구)<br>○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다곡리(하다마을 입구) | 7.5㎞ |
| 상상호 (이사천) | 지방도 제58호 | ○시점: 전남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지방도 제818호 합류점) | 9.0㎞ |

| | | | |
|---|---|---|---|
| | (시도 제4호) | ○종점: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지방도 제857호 합류점) | |
| 회야호 | 군도 제18호 | ○시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못산소류지 입구)<br>○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초소 앞) | 4.2㎞ |
| 덕동호 | 일반국도 제4호 | ○시점: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보블로삼거리)<br>○종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장항삼거리) | 12.6㎞ |
| 운문댐(낙동강) | 국도 제20호 (댐 관통) | ○시점: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지방도 제69호 합류점)<br>○종점: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지촌2교(지방도 제921호 합류점) | 12.9㎞ |
| 남강댐(낙동강) | 군도 제7호 (댐 상류) | ○시점: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완사<br>○종점: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장신 | 3.1㎞ |
| | 군도 제18호 (댐 인접) | ○시점: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31<br>○종점: 경남 진주시 넝동면 내평리 산 23-2 | 18.0㎞ |
| 밀양댐(낙동강) | 지방도 제1050호 (댐 인접) | ○시점: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댐관리소 입구)<br>○종점: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대리사거리) | 6.6㎞ |

[별표 12]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1. 안내판의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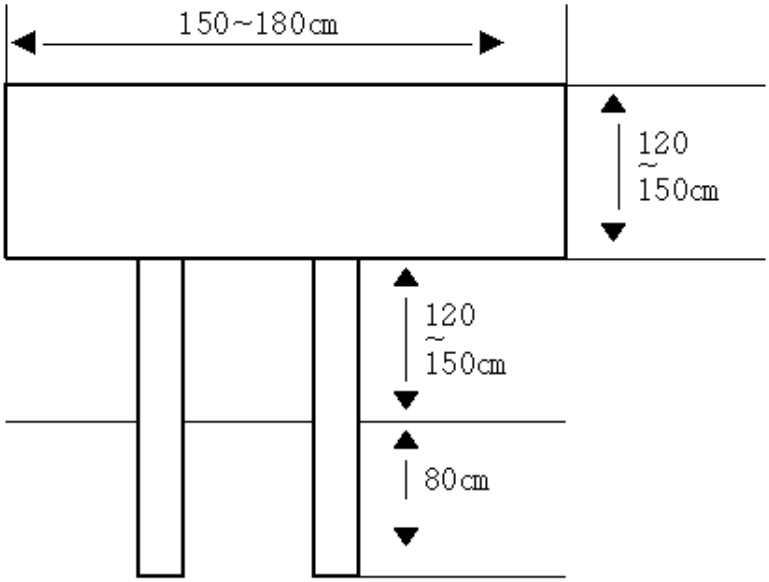


○ 두께 및 재질: 3밀리미터 또는 4밀리미터 두께의 철판
○ 바탕색: 청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

가. 낚시금지구역

알림

1. 이 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입니다.
2. 낚시금지구역에서는 하천·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경찰서장

나. 낚시제한구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7.5>

#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뒤쪽참조 |
|---|---|---|---|

| | | | | |
|---|---|---|---|---|
| 신청(신고인) | ①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② 대 표 자 |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신청(신고) 내용 | ⑤ 사업종류 | (분류번호 ) | ⑥ 주생산품 | |
| | ⑦ 설치개시 예정일 | 년 월 일 | ⑧ 가동개시 예정일 | 년 월 일 |
| | ⑨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 | 폐수배출시설명 | 제품별 생산능력( /일) | 폐수배출량(㎥/일) |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
| | | | | |
| | | | | |
| | | | | |
| | ⑩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 ⑪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
| | ⑫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 | | |
| | ⑬ 측정기기 부착항목 | | | |
| | ⑭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 ] 해당없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br>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br>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br>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br>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 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br>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br>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br>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br>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br>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수수료 : 1만원<br>(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알림

1. 이 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제한구역입니다.
2. 낚시제한구역에서는 하천·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사.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포획금지행위
아.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경찰서장

비고 : 제2호사목 및 아목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

(뒤 쪽)

##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에는

가.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⑧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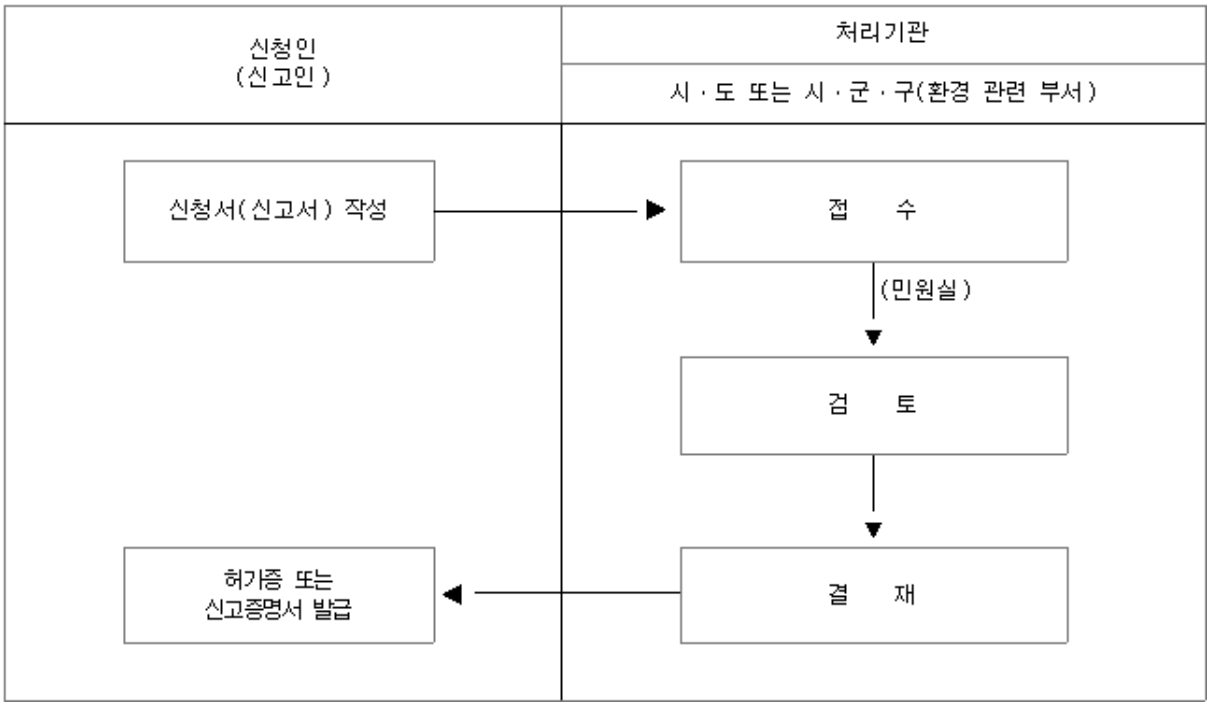

[별표 13] <개정 2013.9.5>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 대상규모 / 항목 / 지역구분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 | | 1일 폐수배출량 2 천세제곱미터 미만 | | |
|---|---|---|---|---|---|---|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 부유 물질량 (mg/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 부유 물질량 (mg/L) |
| 청정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가지역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 나지역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120 이하 | 130 이하 | 120 이하 |
| 특례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7.5>

#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허가(신고)번호 제 호 | 접수일 | 처리기간 뒤쪽참조 |
|---|---|---|

| | | |
|---|---|---|
| 신청(신고)인 | ① 사업장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 표 자 | |
| | 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 설치개시 예정일 | | 가동개시 예정일 | |

| | | |
|---|---|---|
| 변경사항 | ⑥ 변경 전 | ⑦ 변경 후 |
| | | |

| | |
|---|---|
| ⑧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제33조제2항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br>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변경허가신청)<br>5,000원<br>(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

## 작 성 방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⑧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삭제 <2010.4.2>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항 목 \ 지역구분 |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온이온농도 |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mg/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mg/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mg/L) |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시안함유량(mg/L) |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크롬함유량(mg/L) |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mg/L) |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아연함유량(mg/L) |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구리함유량(mg/L) |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mg/L) |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수은함유량(mg/L) |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유기인함유량(mg/L) |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비소함유량(mg/L) |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납함유량(mg/L) |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mg/L) |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mg/L) |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PCB함유량(mg/L) |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색도(도) |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온도(℃) |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총질소(mg/L) |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총인(mg/L) |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mg/L) |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mg/L) |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벤젠(mg/L) |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mg/L) |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생태독성(TU) |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뒤 쪽)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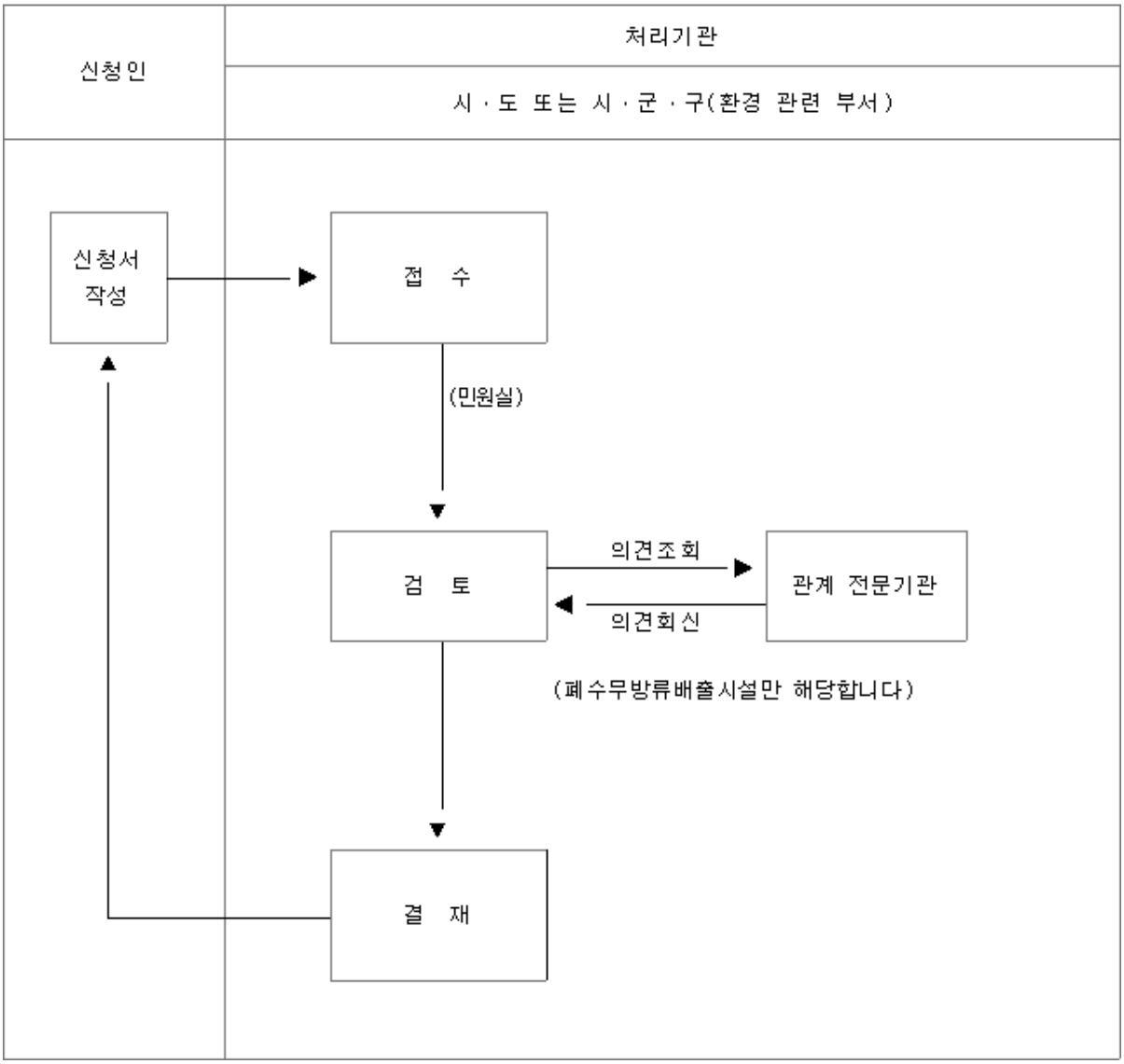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청정지역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5.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의 생태독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18) 48),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31),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6. 생태독성은 영 별표 13에 따른 1종 및 2종 사업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항 목 \ 지역 구분 |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온이온농도 |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노말헥산추출물질 함유량 | 광유류(mg/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mg/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mg/L) |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시안함유량(mg/L) |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크롬함유량(mg/L) |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mg/L) |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아연함유량(mg/L) |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mg/L) |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mg/L) |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수은함유량(mg/L) |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유기인함유량(mg/L) |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비소함유량(mg/L) |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납함유량(mg/L) |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mg/L) |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mg/L) |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PCB함유량(mg/L) |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색도(도) |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온도(℃) |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총질소(mg/L) |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총인(mg/L) |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mg/L) |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mg/L) |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벤젠(mg/L) |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mg/L) |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 | | |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셀레늄함유량(mg/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사염화탄소(mg/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mg/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mg/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클로로포름(mg/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항목 \ 지역 구분 |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온이온농도 |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mg/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mg/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mg/L) |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 | | |
|---|---|---|---|---|
| 시안함유량(mg/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크롬함유량(mg/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mg/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아연함유량(mg/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mg/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mg/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수은함유량(mg/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유기인함유량(mg/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비소함유량(mg/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납함유량(mg/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mg/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mg/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PCB함유량(mg/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총질소(mg/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총인(mg/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mg/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mg/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벤젠(mg/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mg/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셀레늄함유량(mg/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사염화탄소(mg/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mg/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mg/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클로로포름(mg/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니켈(mg/L) | 0.1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바륨(mg/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1,4-다이옥산(mg/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 0.02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염화비닐(mg/L) | 0.01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아크릴로니트릴(mg/L) | 0.01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브로모포름(mg/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

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항 목 \ 지역 구분 |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온이온농도 |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mg/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mg/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mg/L) |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시안함유량(mg/L) |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크롬함유량(mg/L) |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mg/L) |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아연함유량(mg/L) |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mg/L) |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mg/L) |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수은함유량(mg/L) |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유기인함유량(mg/L) |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비소함유량(mg/L) |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납함유량(mg/L) |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mg/L) |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mg/L) |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 | | |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PCB함유량(mg/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총질소(mg/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총인(mg/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mg/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mg/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벤젠(mg/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mg/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셀레늄함유량(mg/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사염화탄소(mg/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mg/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mg/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클로로포름(mg/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니켈(mg/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바륨(mg/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1,4-다이옥산(mg/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염화비닐(mg/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아크릴로니트릴(mg/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1.0 이하 |
| 브로모포름(mg/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삭제 <2013.9.5>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지역 구분 / 항 목 |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온이온농도 |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노말헥산 추출물질 함유량 | 광유류(mg/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mg/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mg/L) |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시안함유량(mg/L) |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크롬함유량(mg/L) |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mg/L) |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아연함유량(mg/L) |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mg/L) |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mg/L) |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수은함유량(mg/L) |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유기인함유량(mg/L) |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비소함유량(mg/L) |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납함유량(mg/L) |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mg/L) |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mg/L) |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PCB함유량(mg/L) |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색도(도) |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온도(℃) |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 | | |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바륨(㎎/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1.0 이하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나프탈렌(㎎/L) | 0.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폼알데하이드(㎎/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톨루엔(㎎/L) | 0.7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 자일렌(㎎/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4] <개정 2010.4.2>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영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br>제 호 |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증<br>□ 신고증명서 | |
|---|---|---|---|
| ① 사 업 장 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 표 자 | | | |
| ④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종류 | (분류번호 ) | ⑥ 종 류 | 종 |
| ⑦ 폐수배출시설 일일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 ⑧ 수질오염방지시설 일일 가동시간 및 연간가동일 | |

⑨ 폐 수 배 출 요 인 명 세

| 원 료 명 | 사 용 량 | 생 산 제 품 명 | 생 산 량 |
|---|---|---|---|
| | | | |
| | | | |
| | | | |
| | | | |

허가 또는 신고 사항

⑩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따로 붙임

⑪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 폐수배출시설명 | 폐수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 폐수처리방법 | 폐수처리능력 |
|---|---|---|---|---|
| | | | | |
| | | | | |

⑫ 폐수처리계통도: 따로 붙임

⑬ 허 가 또 는 신 고 의 수 리 조 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가 배출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영 제79조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가목 단서에 따라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뒤 쪽)

< 변경사항 >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14의2] <신설 2012.1.19>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내 용</th><th>제출시기</th></tr>
<tr><td rowspan="5">자료 수집기 및 측정 기기</td><td rowspan="2">점검</td><td>일반 점검</td><td>·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br>· 측정기기 교정<br>· 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br>(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td><td>사전</td></tr>
<tr><td>긴급점검</td><td>·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br>· 원인규명과 수리</td><td>사후</td></tr>
<tr><td rowspan="2">상태 정보 발생</td><td>가동중지 · 점검중</td><td>· 원인규명과 수리준비(제작업체에 의뢰)<br>· 수리 · 교환을 위한 부품 수급</td><td rowspan="2">사후</td></tr>
<tr><td>통신불량 동작불량</td><td>· 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td></tr>
<tr><td colspan="2">자동측정자료의 미수신</td><td>· 자료수집기(중간자료수집기) 점검, 전기설비 자체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전기안전 점검 등</td><td>사전</td></tr>
<tr><td rowspan="3">기타</td><td colspan="2" rowspan="2">정도 검사</td><td>·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td><td rowspan="2">사전</td></tr>
<tr><td>· 정도검사 기간</td></tr>
<tr><td colspan="2">그 외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시료펌프 순간정전 후, 자동교정 후, 기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 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td><td>사후</td></tr>
</table>

비고 : 개선사유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 · 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2012.7.5>

[별표 15] <개정 2012.1.19>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제71조 관련)

1.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가 부득이하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려는 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처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방류량, 약품투입량, 관리·운영자,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방류수수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일당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6.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수질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해당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간 3회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수질관리 분야 기술사

[별표 16]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제72조 관련)

1. 배수관의 관경은 내경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과 관경(管徑)·관종(管種)이 달라지는 지점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防臭)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1.29>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 | 처리기간 |
|---|---|---|
| 제 호 | | 즉시 |

| | | |
|---|---|---|
| 신고인 | ① 사업장명 | |
| | ② 대 표 자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⑤ 사업종류 | | |
| ⑥ 가동시작 예정일 | | 년 월 일 |
| ⑦ 설치명세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수수료 |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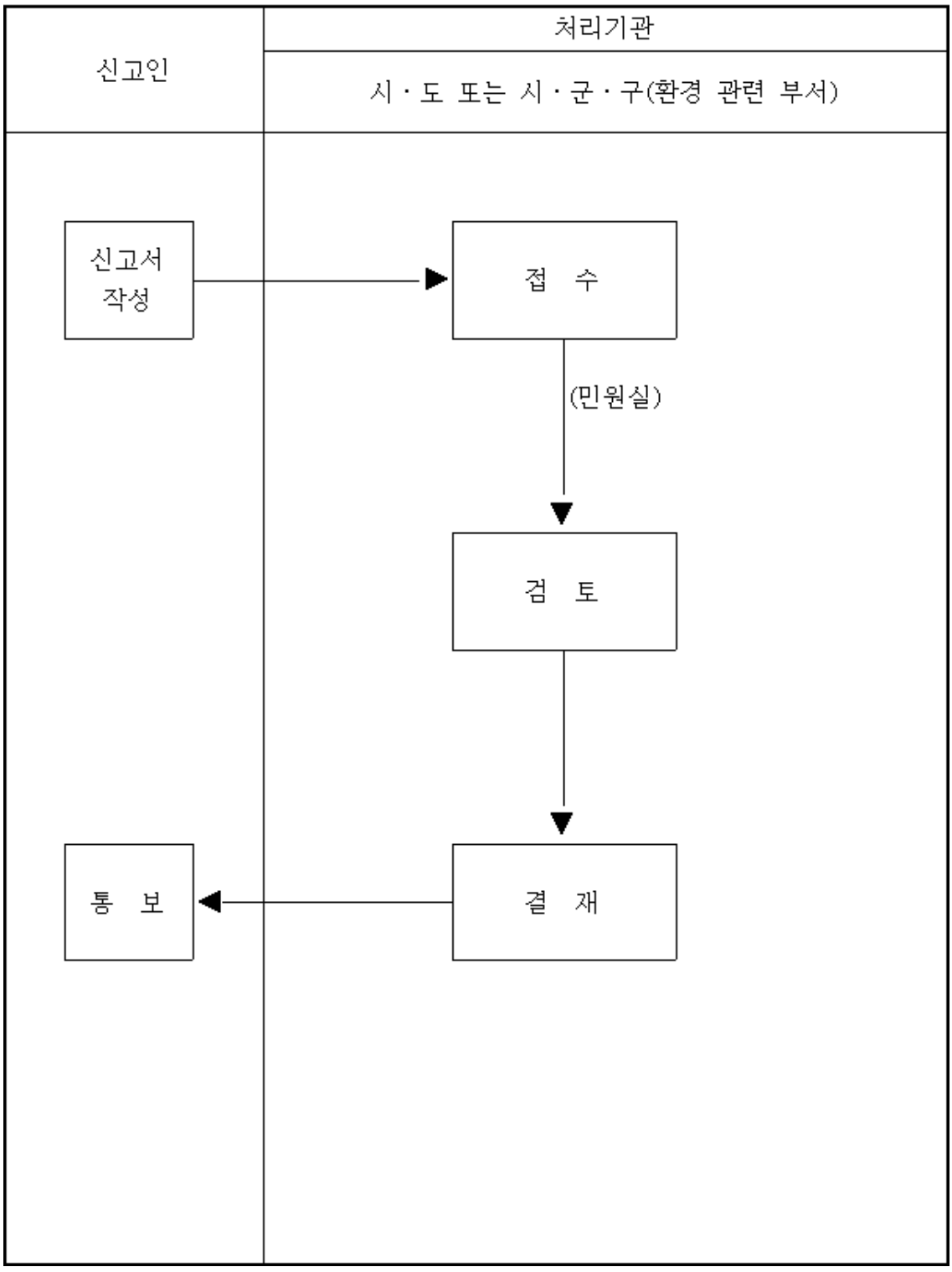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나.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가능한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라.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기상 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인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가) 자연형 저류지는 지반을 절토·성토하여 설치하는 등 사면의 안전도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1.29>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 제 호 | | 5일 |

| 신청인 | | |
|---|---|---|
| | ① 사업장명 | |
| | ② 대 표 자 | |
| | ③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당 초 | | 변 경 | |
|---|---|---|---|
| ④ 가동시작 예정일 | 년 월 일 | ⑤ 가동시작 예정일 | 년 월 일 |
| ⑥ 변경신청사유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시작일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습니다. | 수수료 |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다.

나) 저류지 계획최대수위를 고려하여 제방의 여유고가 0.6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강우유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에 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유입·유출구 아래에 웅덩이를 설치하거나 사석(砂石)을 깔아야 한다.

라) 저류지의 호안(湖岸)은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식생 등의 방법으로 사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마)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저류시설에 물이 항상 있는 연못 등의 저류지에서는 조류 및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의하여 용해성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위가 변동하는 저류지에서는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출수가 수위별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점에서 소류력이 작아지도록 설계한다.

아) 저류지의 부유물질이 저류지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여과망, 여과쇄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저류지는 퇴적토 및 침전물의 준설이 쉬운 구조로 하며, 준설을 위한 장비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인공습지의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은 2 : 1 이상으로 한다.

나)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습지 전체 면적 중 50퍼센트는 얕은 습지(0~0.3미터), 30퍼센트는 깊은 습지(0.3~1.0미터), 20퍼센트는 깊은 못(1~2미터)으로 구성한다.

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0.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물이 습지의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심을 유지하고, 물 이동이 원활하도록 습지의 형상 등을 설계하며, 유량과 수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마) 습지는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먹이사슬로 수질정화가 촉진되도록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엽식물 등의 수생식물과 조류,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 소형 어패류 등의 수중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바) 습지에는 물이 연중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유량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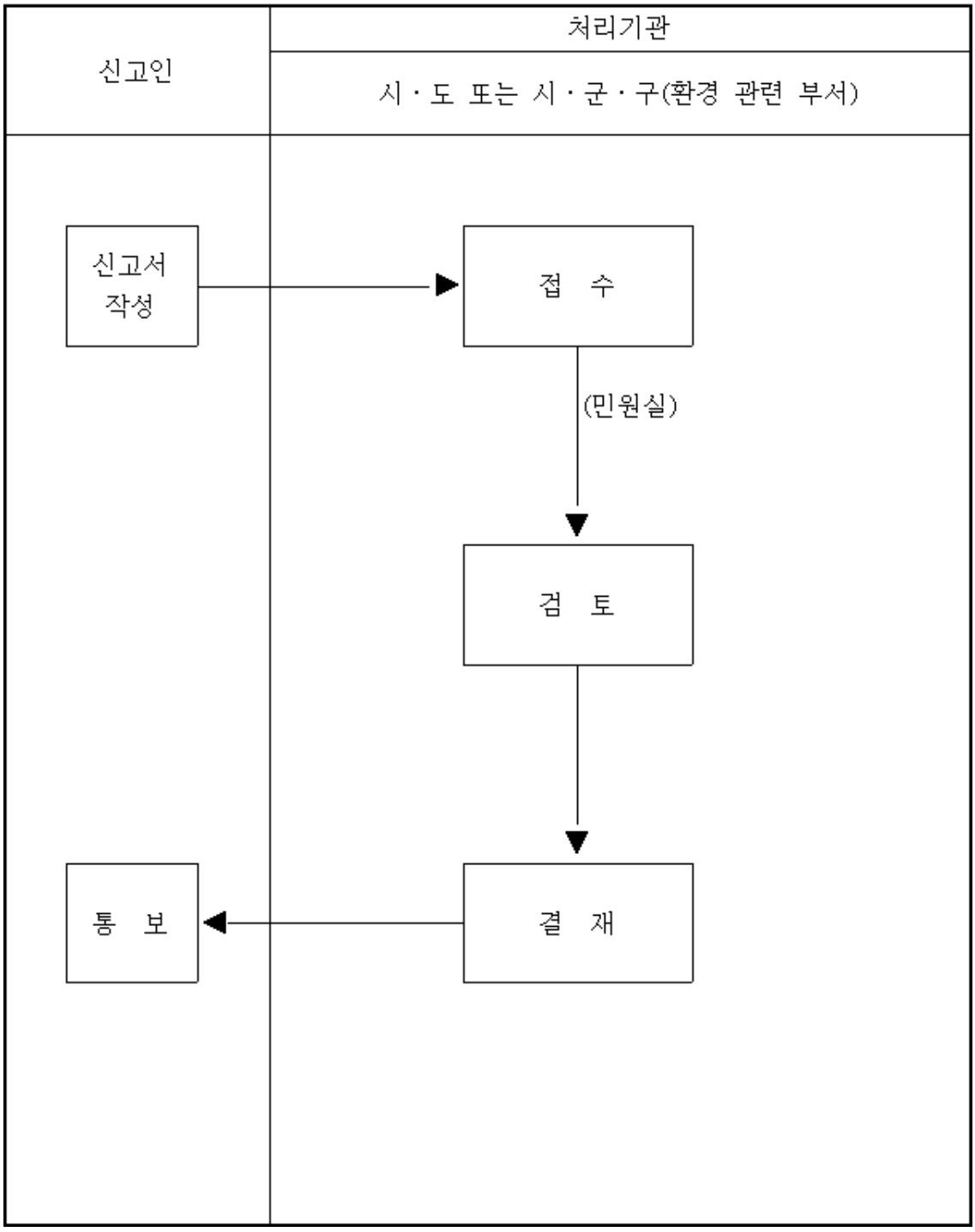


가) 미생물 접촉시설에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미생물 접촉시설은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도 미생물정화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한다.

사) 생물의 서식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5종부터 7종까지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아) 부유성 물질이 습지에서 최종 방류되기 전에 하류수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출구 부분에 자갈쇄석, 여과망 등을 설치한다.

3) 침투시설

가) 침전물(沈澱物)로 인하여 토양의 공극(孔隙)이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나) 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에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라) 침투도랑, 침투저류조는 초과유량의 우회시설을 설치한다.

마) 침투저류조 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암거 등 비상배수시설을 설치한다.

4) 식생형 시설

길이 방향의 경사를 5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시설의 제거효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류시간, 여과재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여과재 통과수량을 고려하여 여과 면적과 여과 깊이 등을 설계한다.

2) 와류형(渦流形) 시설

가) 입자성(粒子性)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와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입자상 수질오염물질의 침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면적 부하율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다) 슬러지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3) 스크린형 시설

가) 제거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의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단시간에 발생하는 유량을 차집(遮集)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앞 단에 저류조를 설치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저류지의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植生)을 제거·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공습지의 퇴적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인공습지의 식생대가 50퍼센트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식물을 심어야 한다.

라) 인공습지에서 식생대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유로(流路)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수생식물을 잘라내는 등 수생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인공습지 침사지의 매몰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50퍼센트 이상 매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침투시설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 결재 | 환경기술인 | 부서장 | 공장장 | 대표자 |
|---|---|---|---|---|
| | | | | |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1. 폐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 구분 \ 시간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

| 구분 \ 시간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대별 근무자 직·성명 | ※ 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 | | | | | | | | | | | | | | | | | | | | | | |

3.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 구분 \ 항목 | | 전일 지침(㎥) | 금일 지침(㎥) | 사용량(㎥/일) | 검침 시간대 |
|---|---|---|---|---|---|
| 계 | | | | | |
| 상수도 | 1호 | | | | |
| | 2호 | | | | |
| 공업용수 | 1호 | | | | |
| | 2호 | | | | |
| 지하수 | 1호 | | | | |
| | 2호 | | | | |
| 하천수 | 1호 | | | | |
| | 2호 | | | | |
| 해수 등 기타 | 1호 | | | | |
| | 2호 | | | | |

| 구분 \ 항목 | 전일 지침(㎥) | 금일 지침(㎥) | 배출량 및 사용량(㎥/일) |
|---|---|---|---|
| 폐수발생량 | | | |
| 폐수배출량 | | | |
| 냉각수량 | | | |
| 소모(증발량) | | | |
| 재사용량 | | | |
| 생활용수량 | | | |

4. 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량

| 슬러지발생량(㎥) | 처리량(㎥) | 보관량(㎥) | 함수율(%) | 보관장소 |
|---|---|---|---|---|
| | | | | |
| | | | | |

※ 슬러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장소: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소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 토양의 공극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시설 내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침투시설은 침투단면의 투수계수 또는 투수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식생형 시설

가)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야 한다.

나)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처리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전(前) 처리를 위한 침사지(沈砂池)는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와류(渦流)형 시설

침전물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스크린형 시설

망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망 사이의 협잡물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다량의 슬러지(sludge) 발생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쟈 테스트(Jar-test)를 실시하거나 쟈 테스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 등을 이용하여 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량의 응집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미생물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나) 부하변동이 심한 강우유출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미생물의 활성(活性)을 유지하도록 한다.

(뒤 쪽)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 원료 또는 첨가제 등 | | | | | | | | |
|---|---|---|---|---|---|---|---|---|
| 사용량(kg) | | | | | | | | |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공통어로 기재합니다.

6. 전력사용량

| 가동시간 | 사용량 (kWh) | 금일 폐수 1㎥당 소모전력량(kWh/㎥) | 검침시간 | 적산전력계 지침 | 참고사항 |
|---|---|---|---|---|---|
| | | | | | |

7. 약품사용량

| 약품명 | 구입량 | 약품 소모량 | 잔고량 | 비고 | 약품명 | 구입량 | 약품 소모량 | 잔고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8. 폭기조 운전상태(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 pH | 수온 | DO | SV30 | MLSS | SVI | 폭기시간 | 주미생물상태 |
|---|---|---|---|---|---|---|---|
| | | | | | | | |

※ 미생물 관찰: 현미경 보유(600배율 이상), 주미생물상태는 양호 또는 불량으로 적습니다.

9.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0. 수질오염물질 측정내용

| 항목 / 구분 | pH | BOD COD | SS | n-Hex | CN | Cu | | | | | | 분석일 |
|---|---|---|---|---|---|---|---|---|---|---|---|---|
| 원폐수 | | | | | | | | | | | | |
| 방류수 | | | | | | | | | | | | |

※ 사업장에서 분석하는 경우 분석자명:

※ 분석을 위탁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11.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항목별 점검내용

| 항목 / 구분 | pH | BOD | COD | SS | TN | TP | 유량계 | 시료채취조 |
|---|---|---|---|---|---|---|---|---|
| 청소상태 | | | | | | | | |
| 시료도입(튜빙류) 상태 | | | | | | | | |
| 시약류 주입상태 | | | | | | | | |
| 센서류 작동여부 | | | | | | | | |
| 소모품 교체 | | | | | | | | |

12. 지도·점검을 받은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폐수처리방법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별표 19] <개정 2012.1.19>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 기타 수질오염원의 구분 | | 시설 설치 등의 조치 |
|---|---|---|
| 1.수산물 양식시설 | 가. 가두리 양식어장 | 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부상(浮上)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br>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3)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br>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br>6) 어병(魚病)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 1) 시료찌꺼기·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 1에 따라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br>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 결재 | 환경기술인 | 부서장 | 공장장 | 대표자 |
|---|---|---|---|---|
| | | | | |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 구분 \ 시간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

| 구분 \ 시간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대별 근무자 직·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3.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 구분 \ 항목 | | 전일지침 (㎥) | 금일지침 (㎥) | 사용량 (㎥/일) | 검침 시간대 |
|---|---|---|---|---|---|
| 계 | | | | | |
| 상수도 | 1호 | | | | |
| | 2호 | | | | |
| 공업용수 | 1호 | | | | |
| | 2호 | | | | |
| 지하수 | 1호 | | | | |
| | 2호 | | | | |
| 하천수 | 1호 | | | | |
| | 2호 | | | | |
| 해수 | 1호 | | | | |
| 기타 | 2호 | | | | |

| 구분 \ 항목 | | 전일 지침 (㎥) | 금일 지침 (㎥) | 누계 (㎥/일) |
|---|---|---|---|---|
| 폐수발생량 | | | | |
| 폐수처리량 | 소계 | | | |
| | 재이용 | | | |
| | 증발 농축 | | | |
| | 건조 | | | |
| | 소각 | | | |
| 폐수보관량 | | | | |

4. 증발·농축·건조·소각 후 슬러지(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량

| 슬러지발생량(톤) | 처리량(톤) | 보관량(톤) | 함수율(%) | 보관장소 |
|---|---|---|---|---|
| | | | | |
| | | | | |

※ 슬러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장소: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소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
| | |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br>3)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br>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br>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다. 수조식 양식어업 시설 | 나목에 정한 조치의 내용과 같다. |
| 2. 골프장 | | 1)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br>2)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조정지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3.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 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br>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br>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하면 흡착제 등으로 흡착·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br>4) 위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5) 강우 시 작업장 바닥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밀리미터 강우 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 |

(뒤 쪽)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 원료 또는 첨가제 등 | | | | | | | | |
|---|---|---|---|---|---|---|---|---|
| 사용량 (kg) | | | | | | | | |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기재하십시오.

6. 전력 사용량

| 가동시간 | 사용량 (kWh) | 금일 폐수 1㎥당 소모전력량(kWh/㎥) | 검침시간 | 적산전력계 지침 | 참고사항 |
|---|---|---|---|---|---|
| | | | | | |

7. 약품 사용량

| 약품명 | 구입량 | 약품소모량 | 잔고량 | 비고 | 약품명 | 구입량 | 약품소모량 | 잔고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수·보수 현황

| 시설명 | 고장내용 | 개수·보수내용 | 기간 | 개수·보수업체 | 내용 |
|---|---|---|---|---|---|
| | | | | | |

9.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

| 구분 \ 항목 | 일반항목 | | | | | 특정수질유해물질 | | | | |
|---|---|---|---|---|---|---|---|---|---|---|
| | BOD | COD | SS | T-N | T-P | | | | | |
| 원폐수 | | | | | | | | | | |
| 처리수 (재이용) | | | | | | | | | | |

10.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1. 지도·점검을 받은 사항

| | |
|---|---|
| | 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을 30㎎/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br>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센티미터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4.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 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br>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br>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5.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 1) 별표 1 제5호가목 또는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별표 1 제5호나목 또는 제6호가목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br>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 14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br>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록하되, 최종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6. 복합물류 터미널시설 | 가. 강우시 사업장 바닥의 비점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초기강우 5밀리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작업장면적에서 발생하는 강우를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질 5㎎/L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br>나. 비점오염물질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사업장내 노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비고 : 1. 양만장, 일반양어장,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별도의 시설 또는 조치

를 명령할 수 있다.

2.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기타 수질오염원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하나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과 기타 수질오염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연월일 | 결 재 | | 가동시간 ( ~ ) | 원료사용량 | | | | 용 수 사용량 (L) | 폐 수 발생량 (L) | 폐수위탁처리 | | | 보 폐수 (L |
|---|---|---|---|---|---|---|---|---|---|---|---|---|---|
| | 대표자 | 환경기술인 | | | | | | | | 위탁량 (L) | 위탁·수탁 확 인 서 일련번호 | 처 리 업 소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

[별표 20] <개정 2014.1.29>

##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제90조제1항 관련)

| 구분 \ 종류 | |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재이용업 |
|---|---|---|---|
| 1. 기술능력 |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br>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명 이상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 2. 시설 및 장비 | 가. 실험실 | 1) 공장 안에 설치하고 구획되어 있을 것<br>2) 바닥과 내면은 불연성 자재로서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br>3) 급수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을 것<br>4) 위 3)에서의 배수시설을 통한 실험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br>5) 환기장치가 되어 있을 것<br>6) 항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br>7)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다목의 저장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
| | 나. 실험기기 및 기구 |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br>1) 수소이온농도(pH)<br>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br>3) 화학적산소요구량(COD)<br>4) 부유물질(SS)<br>5) 페놀<br>6) 시안<br>7) 총크롬 및 6가크롬<br>8) 아연<br>9) 구리<br>10) 카드뮴<br>11) 비소<br>12) 납 |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br>1) 수소이온농도(pH)<br>2) 화학적산소요구량(COD)<br>3) 부유물질(SS)<br>4) 재생·이용 폐수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성분 |

| | | |
|---|---|---|
| | 13) 용해성 망간<br>14) 플루오르<br>15) 수은 | |
| 다. 저장시설 | 1) 폐수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가동시간으로 한다)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반입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퍼센트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br>2) 폐수는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탁폐수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3) 저장시설은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br>4)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br>5)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1) 원폐수 및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의 각각 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가동시간으로 한다)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반입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퍼센트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br>2) 폐수는 성상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재이용 폐수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3)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br>4) 원폐수 및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의 저장시설은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br>5)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처리시설 | 1) 처리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 | 1) 재이용하고자 하는 폐수의 재생이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br>2)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 |

| | | | |
|---|---|---|---|
| | | 를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또는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br>가) 증발농축시설<br>나) 건조시설<br>다) 소각시설<br>라) 등록기관이 가)부터 다)까지의 시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br>2) 폐수처리시설의 총 처리능력은 7.5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위 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처리능력 합을 말하며, 증발농축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건조시설과 같이 주처리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시설은 제외한다].<br>3) 폐수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br>가) 증발농축시설<br>(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한다)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br>(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공정의 시설은 응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 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 또는 등록기관이 이와 같은 시설과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3) 처리시설 능력은 재이용시설을 최대 가동 시 배출되는 폐수용량이어야 한다.<br>4) 폐수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br>가) 증발농축시설<br>(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한다)의 적산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br>(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공정의 시설은 응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나) 건조시설<br>(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br>(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br>다) 소각시설<br>(1)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 |

| | | | |
|---|---|---|---|
| | | 한다.<br>나) 건조시설<br>(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br>(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br>다) 소각시설<br>(1) 처리능력은 2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br>(2)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이어야 한다.<br>(3)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br>(4)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br>(5)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br>(6) 휴대용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산소측정기를 비치하고, 온도를 자동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시간은 최소 1초 이상이어야 한다.<br>(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br>(3)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br>(4)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br>(5)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과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를 갖추어야 한다.<br>(6) 온도를 자동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br>(7) 시설 유입폐수의 적산 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라) 기타 부대시설<br>(1)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br>(2)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기물을 적정 |

| | | | |
|---|---|---|---|
| | | (7) 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라) 물리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 처리 또는 후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br>(1) 처리능력은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br>(2) 대상폐수는 등록기관에서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로 한정한다.<br>(3) 삭제 <2014.1.29><br>(4) 폐수처리약품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마) 생물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처리 또는 후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br>(1) 처리능력이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br>(2) 대상폐수는 등록기관에서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로 한정한다.<br>(3) 삭제 <2014.1.29> |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br>5)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br>6)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br>7)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

(4) 생물화학적처리에 필요한 약품류 등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기타 부대시설

(1)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기물을 적정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마. 운반장비 | 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세제곱미터 이상의 탱크로리, 1세제곱미터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br>2) 폐수운반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 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br>3) 폐수운반 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br>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 12(1016)]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br>5) 운송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 | 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세제곱미터 이상의 탱크로리, 1세제곱미터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제용기(유가품인 경우만 해당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br>2) 폐수운반 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 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br>3) 폐수운반 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br>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 12(1016)]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br>5) 운송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어 |

| | | | |
|---|---|---|---|
| | | 어 두어야 한다. | 두어야 한다. |

비고 : 1.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을 함께 하려는 때는 같은 요건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폐수처리업자 또는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는 환경관련사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실험실·실험기기 및 기구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5. 기술능력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이고 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동일한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중복하여 임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지 제21호서식]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 일 시 | 년 월 |
|---|---|
| 업 체 명 | |
| 환경기술인 | |

1. 폐수처리업 운영현황

| 폐수수탁량(L) | | | 폐수처리량(L) | | 폐기물처리량(kg) | | | | 폐수배 | |
|---|---|---|---|---|---|---|---|---|---|---|
| 계 | 전일 처리잔량 | 금일 수탁량 | 금일 처리량 | 금일 처리잔량 | 전일 잔량 | 금일 발생량 | 금일 처리량 | 금일 처리잔량 | 발 생 량 | 재이 |
| | | | | | | | | | | |

2. 폐수처리현황

| 폐수종류 | 합계 | H-1 (도금 산화계) | H-2 (도금 환원계) | H-3 (도금 혼합) | H-4 (실험 실폐수) | H-5 (기타 중금속) | A-1 (폐산) | K-1 (폐 알칼리) | M-1 (기타 금속) | P-1 (사진 현상) | P-2 (사진 정착) | P-3 (사진 세척수) | P-4 (인쇄 제판 정착) | P-5 (인쇄 제판 현상) | P-6 (인쇄 제판 세척수) | B-1 (보일러 세관 (탈청)) |
|---|---|---|---|---|---|---|---|---|---|---|---|---|---|---|---|---|
| 전일 처리잔량 | | | | | | | | | | | | | | | | |
| 금일 수탁량 | | | | | | | | | | | | | | | | |
| 금일 처리량 | | | | | | | | | | | | | | | | |
| 금일 처리잔량 | | | | | | | | | | | | | | | | |

3. 폐수위탁업소별 수탁량

| 위탁업체명 | 폐수부호 | 수탁량(㎥) | 위탁·수탁 확인서번호 | 위탁업체명 | 폐수부호 | 수탁량(㎥) | 위탁·수탁 확인서번호 | 위탁업체명 | 폐수부호 | 수탁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

[별표 21] <개정 2014.1.29>

##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근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장에 책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수는 폐수처리능력과 처리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처리시설·운반장비 및 실험시설을 항상 점검하여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를 수탁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거를 지연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삭제 <2014.1.29>
6. 폐수는 처리방법별(재이용업의 경우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거·운반 및 저장하여야 하고, 그 처리와 관련한 각종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문서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폐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위탁자와 폐수처리업자가 각각 날인하여 1부는 폐수처리업자, 1부는 위탁자가 각각 보관·비치하여야 하며, 폐수(위)수탁확인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폐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퍼센트 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반기별로 수탁폐수(재이용폐수를 포함한다)의 위탁업소별·성상별 수탁량·처리량(재이용량을 포함한다)·보관량 및 폐기물 처리량 등을 다음 반기의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등록을 한 운반시설로서 수탁폐수 외의 다른 화물을 운반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운반장비·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은 항상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
13. 별표 13의 "나지역"에 입지한 시설 중 하수처리구역 또는 공동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입지한 시설은 별표 13에도 불구하고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4.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5.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에 한정하여 수탁하여야 하며, 그 폐수는 해당 처리방법별로 분리·저장하여야 한다.
16. 소각시설의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는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초기 승온은 850℃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처리대상 폐수를 투입하여야 한다.
17.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매월 1회 자가측정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악취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하여는 별표 20 제2호나목1)부터 15)까지 중 수탁폐수에 함유된 항목을 주 1회 이상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약품·연료 및 전기 사용량

| 구분 | 약품사용량(kg) | | | | | | | | | | 연료사용량(L) | | | 전 |
|---|---|---|---|---|---|---|---|---|---|---|---|---|---|---|
| | NaOH | HCl | | | | | | | | | 경유 | B-C | | |
| 전일 잔량 | | | | | | | | | | | | | | 전일 검침 |
| 금일 입고량 | | | | | | | | | | | | | | 금일 검침 |
| 금일 사용량 | | | | | | | | | | | | | | 사용량 |
| 재고량 | | | | | | | | | | | | | | 비고 |

5. 폐수처리시설가동 및 폐기물처리 현황

| 구분 | 폐수처리시설가동 현황 | | | | | 구분 | 폐수처리시설가동 현황 위탁업소 | | | | |
|---|---|---|---|---|---|---|---|---|---|---|---|
| | 전처리 | 소각 | 건조 | 증발농축 | 기타 | | 전일 잔량 | 금일 발생량 | 금일 처리량 | 금일 잔량 | 보관 |
| 보유대수 | | | | | | 합계 | | | | | |
| 금일 가동대수 | | | | | | 슬럿지 | | | | | |
| 가동시간(시) | | | | | | 소각재 | | | | | |
| 폐수처리량(L) | | | | | | 기타 | | | | | |

6. 용수의 사용 및 재이용 현황

| 처리시설가동사용량(㎥) | | | | | 생활용수량(㎥) | 폐수배출량(㎥) | | | |
|---|---|---|---|---|---|---|---|---|---|
| 계 | 상수 | 공업용수 | 지하수 | 하천수 등 | | 폐수발생량 | 재이용량 | 증발량 | |
| | | | | | | | | | |

7. 수질오염물질 측정 현황

| 항목 | pH | COD | n-Hex | | | | | | | | |
|---|---|---|---|---|---|---|---|---|---|---|---|
| 원폐수 | | | | | | | | | | | |
| 방류수 | | | | | | | | | | | |

8. 처리시설 개수·보수 현황

| 시설명 | 고장내용 | 개수·보수내용 | 기간 | 개수·보수업체 | 내용 |
|---|---|---|---|---|---|
| | | | | | |

9. 지도점검 등 특기사항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13.9.5>

## 측정기기 현황

측정소(사업장)명 : _____ 방류구 : _____ 작성일자 : _____

측정소(사업장) 대표자: _____ 작성자: _____

□ 측정기기

| | | | | | |
|---|---|---|---|---|---|
| 일반사항 | 모델명 | | | | |
| | 제조사 | | | | |
| | 제조년월 | | | | |
| | 측정항목 | | | | |
| | 측정범위 | | | | |
| | 제조번호 | | | | |
| 출력 | 출력방식 | | | | |
| | A/D 컨버터 사용여부 | | | | |
| 형식승인 | 형식승인 번호 | | | | |
| | 형식승인 범위 | | | | |
| 행정사항 | 취 득 일 | | | | |
| | 설 치 일 | | | | |
| | 행정자료 활용시작일 | | | | |
| | 최초 정도 검사일 | | | | |
| | 직전 정도 검사일 | | | | |

□ 자료수집기(Data Logger) /중간자료 수집기(FEP)

| | | | | | |
|---|---|---|---|---|---|
| D/L모델명 | | 제조사 | | | |
| 프로그램 버전 | | 설치일자 | | 반영일자 | |
| 자체출력 연결여부 | | | | | |

| | | | | | |
|---|---|---|---|---|---|
| FEP모델명 | | 제조사 | | | |
| 프로그램 버전 | | 설치일자 | | 반영일자 | |
| 자체출력 연결여부 | | | | | |

□ 유량계

| | | | |
|---|---|---|---|
| 모델명 | | 제조사 | |
| 프로그램 버전 | | 설치일자 | |
| 출력방식 | | A/D컨버터 사용 여부 | |
| 측정범위 | | 배율 | |
| D/L 전송 | [ ]순시유량 [ ]적산유량 | | |

210mm×297mm[백상지 80g/m'(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13.9.5>

##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

측정소(사업장)명 : _____ 방류구: _____ 작성일자 : _____

<table>
<tr><td>점검일자</td><td colspan="2"></td><td>점검자</td><td colspan="2"></td></tr>
<tr><td>점검항목</td><td colspan="5">[ ] pH [ ] BOD [ ] COD [ ] SS [ ] T-N [ ] T-P<br>[ ] 유량계 [ ] D/L [ ]기타</td></tr>
<tr><td rowspan="3">점검내역<br>(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td><td>점검시간</td><td colspan="4">시 분 ~ 시 분</td></tr>
<tr><td colspan="2">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td><td colspan="3">수리 및 조치사항</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8">교정내역<br>(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td><td>교정시간</td><td colspan="4">시 분 ~ 시 분</td></tr>
<tr><td>교정 전 상수 값<br>(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td><td colspan="4"></td></tr>
<tr><td>교정 후 상수 값<br>(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측정항목별 교정 표준물질 및 농도</td><td>항목</td><td>표준물질</td><td>제로농도<br>(mg/L)</td><td>스팬농도<br>(mg/L)</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기타 교정관련 특이사항</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예비 부품 보유현황</td><td>품명</td><td colspan="2">수량</td><td colspan="2">부품번호</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22] <개정 2014.1.29>

##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제2호가목1)의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별표 13에 따른 생태독성은 다른 수질오염물질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2조제1항제1호 | | | | |
|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조업정지 10일 |
| 나)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1.19>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br>제 호 | ☐ 측 정 기 기<br>☐ 폐수배출시설<br>☐ 수질오염방지시설 | 개선계획서 | 처리기간<br>4일<br>(검사기간 제외) |
|---|---|---|---|

| | | | | | |
|---|---|---|---|---|---|
| 사업자 | ① 사업장명 | | | | |
| | ② 대 표 자 | |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 ⑤ 사업종류 | | | ⑥ 주생산품 | | |
| ⑦ 측정기기·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예정)일 | | | ⑧ 개선계획서 제출사유 | | |
| ⑨ 개선완료·가동중단·위탁처리(예정)일 | | | ⑩ 개선(가동중단·위탁)기간 | | |
| ⑪ 부적정 운영명세 | 측정기기 및 시설명 | | 규격 | 수량 | |
| | | | | | |
| ⑫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 항목 | | | | |
| | 농도 | | | | |
| ⑬ 폐수위탁처리 | 위탁처리방법 | | 위탁업체명 | 위탁처리량 | |
| | | | | ㎥/일 | |
| ⑭ 예상평균 폐수배출량 | ㎥/일 | | ⑮ 일일 가동 예상시간: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자체개선계획서 1부 | 수수료<br>없 음 |
|---|---|

210㎜×297㎜[신문용지 64g/㎡(재활용품)]

| | | |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2호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
|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1호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 4)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 법 제42조제1항제7호 | | | | |
|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 조업정지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 나) 영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방지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 | 개선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30일 |
|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9호 | 조업정지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 6)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0호 | | | | |
|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뒤 쪽)

※ 작성요령

1.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거나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등의 개선으로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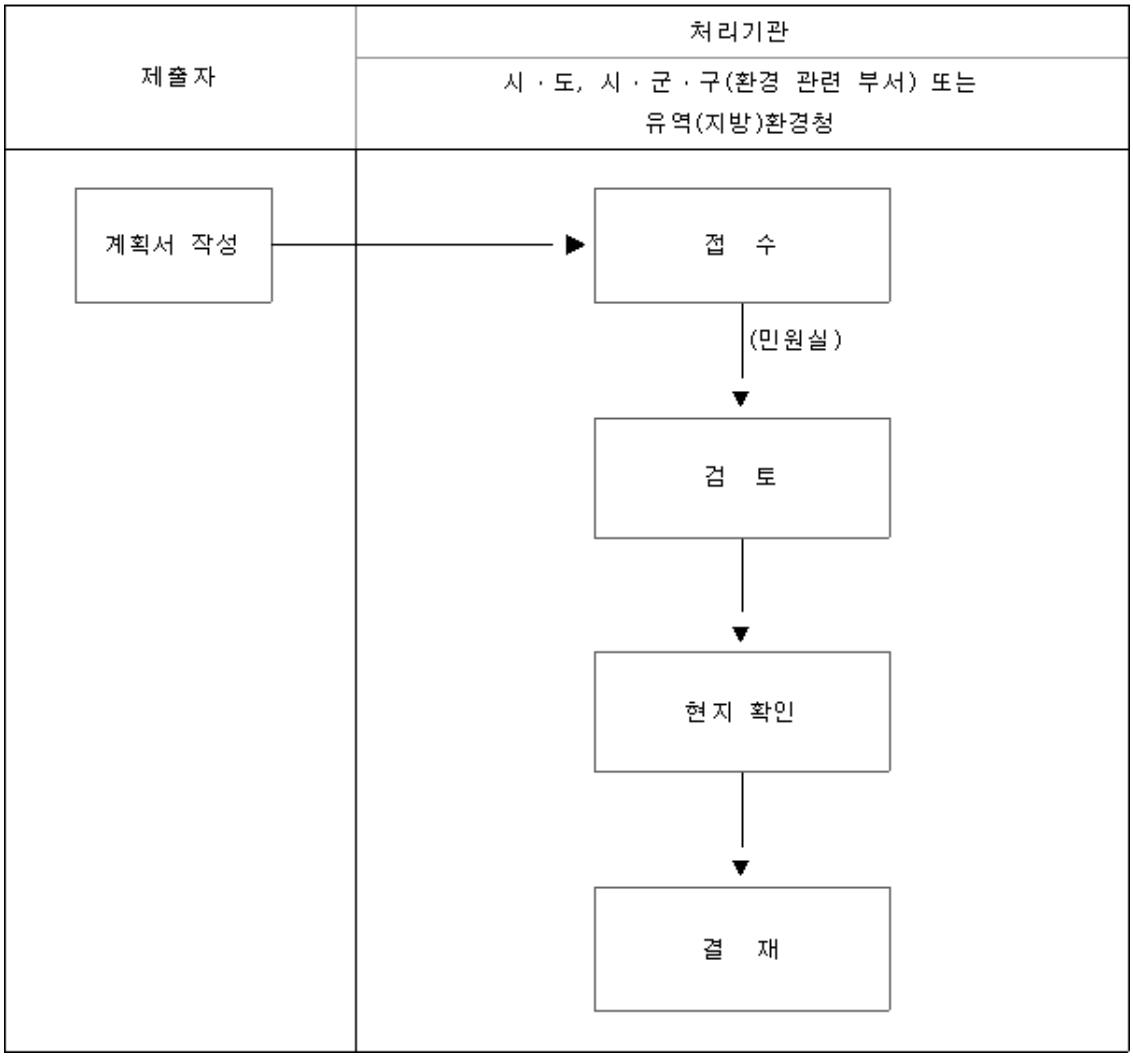

| | | | | | |
|---|---|---|---|---|---|
|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희석인정 취소 |
|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조업정지 3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2호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 8)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조의6제4항, 법 | | | | |
| 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 | 제42조제 | 조업정지 | 허가취소 | | |

| | | | | | |
|---|---|---|---|---|---|
| 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항제14호 | | 또는 폐쇄명령 | | |
| 나)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13호 | 조업정지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 9)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0조 | 개선명령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 10)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 | | | | |
| 가) 그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 법 제44조본문 | 사용중지 | | | |
| 나)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44조단서 | 폐쇄명령 | | | |

| | | | | | |
|---|---|---|---|---|---|
| 다) 그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 법 제44조 단서 | 폐쇄명령 | | | |
| 라) 그 지역이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6호 | 폐쇄명령 | | | |
|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3호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
| 12)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5호 | 허가취소 | | | |
| 13)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 법 제42조제2항제3호 | | | | |
|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 14)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0조제3항 | 경고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비고: 1.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1) 또는 9)의 개선명령 기간은 8개월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2. 8)의 나)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4)의 가)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 완료일까지, 8)의 가)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조치 또는 개선 완료일까지, 5)와 10)의 가)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일까지로 한다.

4.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 차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5. 2), 4), 5), 6), 8)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7. 비고 6에도 불구하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7) 또는 13)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이 1)의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11.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법 제50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5조에 따른다.

나. 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 정 처 분 기 준 | | | |
|---|---|---|---|---|---|
| |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 | 법 제42조 | | | | |

| | | | | | | |
|---|---|---|---|---|---|---|
| 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항제11호 | | | | | |
| 가) 사업장 안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 | 경 고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나) 사업장 안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2)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 | 경 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3)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측정항목별 상태정보(동작불량·통신불량)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 | 경 고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4) 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 또는 자료수집기 등을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 | | | | | |
| 가)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나) 측정기기 또는 자료수집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 | | 경 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허가취소 또는 | |

| | | | | | |
|---|---|---|---|---|---|
| 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 | | | 폐쇄명령 |
| 다)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 경 고 | 경 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 5)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38조의3제2항 | | | | |
| 가) 측정기기가 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경우 | | 경 고 | 조치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 경 고 | 조치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의4제2항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30일 |
|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3호 | 조업정지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비고: 1. 1), 4), 7)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7)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5)의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적용한다.

다.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5조제3항, 법 제39조, 법 제42조 | | | | |
|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 개선명령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 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 개선명령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 2)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5조제3항, 법 제42조 | | | | |
| 가)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나)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다)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라)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 | | | | |
|---|---|---|---|---|---|
| 마) 폐수위탁처리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바)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한 경우 |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사) 그 밖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3) 영 제33조제3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5조제3항,법 제39조, 법 제40조 | | | | |
| 가) 폐수(위탁처리폐수 및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 |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조업정지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나) 폐수처리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 경고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다)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수등 액상 수질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경우 | | 개선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라)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비고: 1. 위 표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3)의 가)의 경우 조업정지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 | |
| 2)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 법 제42조 | | | | |
|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 나)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 법 제42조 | 조업정지 | 허가취소 | | |
| 4)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2조 | | | | |
|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 |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 | | | | | |
|---|---|---|---|---|---|
| 치한 경우 | | | | | |
|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 5) 4)의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 | 허가취소 | | | |
|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2호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30일 |
| 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허가취소 | |
| 8)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 | 법 제42조 | 조업정지 | 허가취소 | | |

| | | | | | |
|---|---|---|---|---|---|
| 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 | | | | |
| 9)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4호 | | | | |
| 가)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 | 사용중지 | | | |
| 나)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폐쇄명령 | | | |
| 다)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 | 폐쇄명령 | | | |
| 10)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 법 제42조제2항제3호 | | | | |
|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무인 경우 |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비고: 1. 사용중지기간은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2.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차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3)의 조업정지기간은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신고일까지로 한다.

4.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마.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법 제53조제3항 및 영 제75조에 따른 저감시설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4항 | | | | |
| 가)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 저감시설 설치명령 | | | |
| 나) 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 저감시설 개선명령 | | | |

바. 기타 수질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0조제5항 | | | | |
|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경고 | 사용중지 | |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경고 | 경고 | 사용중지 | |
| 2)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 | 법 제60조제3항·제4항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조업정지 |

비고: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비고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로부터 1)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일까지, 2)의 경우에는 조치를 끝낸 날까지로 한다.

사.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64조제1항제1호 본문 | 등록취소 | | | |
|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64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
| 3)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1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64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
|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64조제3항제2호 | | | | |
| 가)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나) 1월 이상 실험실이 없는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다)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부족한 경우 |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라)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혀 없는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없는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사) 저장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아) 처리시설이 등록기준에 위반된 경우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 | | | |
|---|---|---|---|---|---|
| 자) 그 밖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0일 |
| 6)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 법 제64조 제3항제1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7) 운반차량과 관련하여 | 법 제64조 | | | | |
| 가)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 |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운반차량에 표시가 없는 경우 |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반차량을 증차 또는 감차한 경우 |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라)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폐수를 운반하거나 성상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하여 운반한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8) 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3호 | | | | |
| 가) 취수중단 또는 사람 및 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등록취소 | 등록취소 | | |
| 나) 그 밖의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9) 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미숙 등으로 처리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법 제64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10)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 법 제64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11)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경 | 법 제64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 | | | |
|---|---|---|---|---|---|
| 우 | | | | | |
| 12) 휴업·영업정지사항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4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 법 제64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
| 14) 변경등록을 게을리 한 경우 [7)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4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
| 15) 폐수인수·인계에 따른 폐수위(수)탁 확인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 법 제64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16)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난 경우 | 법 제64조 | 등록취소 | | | |
| 17) 해양오염방지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 제64조 | 등록취소 | | | |
| 18)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 | 법 제64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19) 폐수위(수)탁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 법 제64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20)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폐수처리업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64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21)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 법 제64조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 22) 폐수방류구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시료채취가 쉽지 아니하도록 설 | 법 제64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30일 | 등록취소 |

| | | | | | |
|---|---|---|---|---|---|
| 치한 경우 | | | | | |
| 23) 등록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이 아닌 폐수를 수탁한 경우 | 법 제64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4) 자가측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4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5) 측정기기(하수·폐수적산유량계)의 고장을 방치하거나 측정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 법 제64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6)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4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

비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가목의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그 기준 중 제2호 사목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

[별표 23] <개정 2014.1.29>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
|---|---|---|---|
|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황검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 연 4회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현황 | 수시 | 허가(변경허가) 후 10일 이내 | 시·도지사 |
| 3.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4. 폐수처리업에 대한 등록·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5.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시·도지사 |
| 6. 환경기술인의 자격별·업종별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시·도지사 |
| 7.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 연 4회 |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8.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 연 4회 |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9.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10. 배출업소 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 수시 | 사고발생시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11. 과징금 부과 실적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 시·도지사 |
| 12. 과징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 시·도지사 |
| 1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 연 4회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14.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 시·도지사 |
| 15. 측정기기 부착시설 설치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 시·도지사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1.19>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br>제 호 | ☐ 측 정 기 기<br>☐ 폐수배출시설<br>☐ 수질오염방지시설 | 개선완료보고서 | 처리기간<br>4일<br>(검사기간 제외) |
|---|---|---|---|

| | | | |
|---|---|---|---|
| 보고인 | ① 사업장명 | | |
| | 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⑤ 사업종류 | | ⑥ 주생산품 | |

| | | | | |
|---|---|---|---|---|
| ⑦ | ☐측 정 기 기<br>☐폐수배출시설<br>☐수질오염방지시설 | 의 | ☐부적정운영 시작일<br>☐수질오염물질 채취일 | 년 월 일 |
| ⑧ | ☐측 정 기 기<br>☐폐수배출시설<br>☐수질오염방지시설 | 의 | ☐가동중단기간<br>☐위탁처리기간 | 년 월 일<br>~ 년 월 일 |
| ⑨ | ☐측 정 기 기<br>☐폐수배출시설<br>☐수질오염방지시설 | 의 | ☐개선완료일<br>☐재가동개시일 | 년 월 일 |

| ⑩ 부적정 운영 개선명세 | 측정기기명 또는 시설명 | 규격 | 수량 | 개선내용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 ☐ 측 정 기 기<br>☐ 폐수배출시설<br>☐ 수질오염방지시설 | 의 |

개선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없습니다. | 수수료<br>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 |
|---|---|---|---|
| 16.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 | 연 2회 | 15일 이내<br>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유역환경청장<br>지방환경청장<br>시·도지사 |
| 17.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 연 2회 | 15일 이내<br>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유역환경청장<br>지방환경청장<br>시·도지사<br>유역환경청장<br>지방환경청장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12.1.19>

(앞 쪽)

#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 | | | | | |
|---|---|---|---|---|---|
| 사업자 | ① 사업장명 | | | | |
| | ② 대 표 자 | | | | |
| | ③ 주 소 | |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장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⑤ 발생시간 | 시작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br>종료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 | | | |
| ⑥ 조치기간 | 완료(예정)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 | | | |
| ⑦ 세부내역 | | | | | |
| ⑧ 조치내역 | 조치 기간 | 시작: 20 년 월 일 시 분<br>종료: 20 년 월 일 시 분 | | | |
| | 내역 | | | | |
| ⑨ 사유내용 | 측정기 | 전송장비 | 시설 | 기타 | |
| | | | | | |
| ⑩ 접수/ 반송 | 접수/반송 | 사유(확인 내역) | | 확인자 | |
| | □접수 □반송 | | | 서명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1.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1부.<br>2. 개선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64g/㎡(재활용품)]

(뒤 쪽)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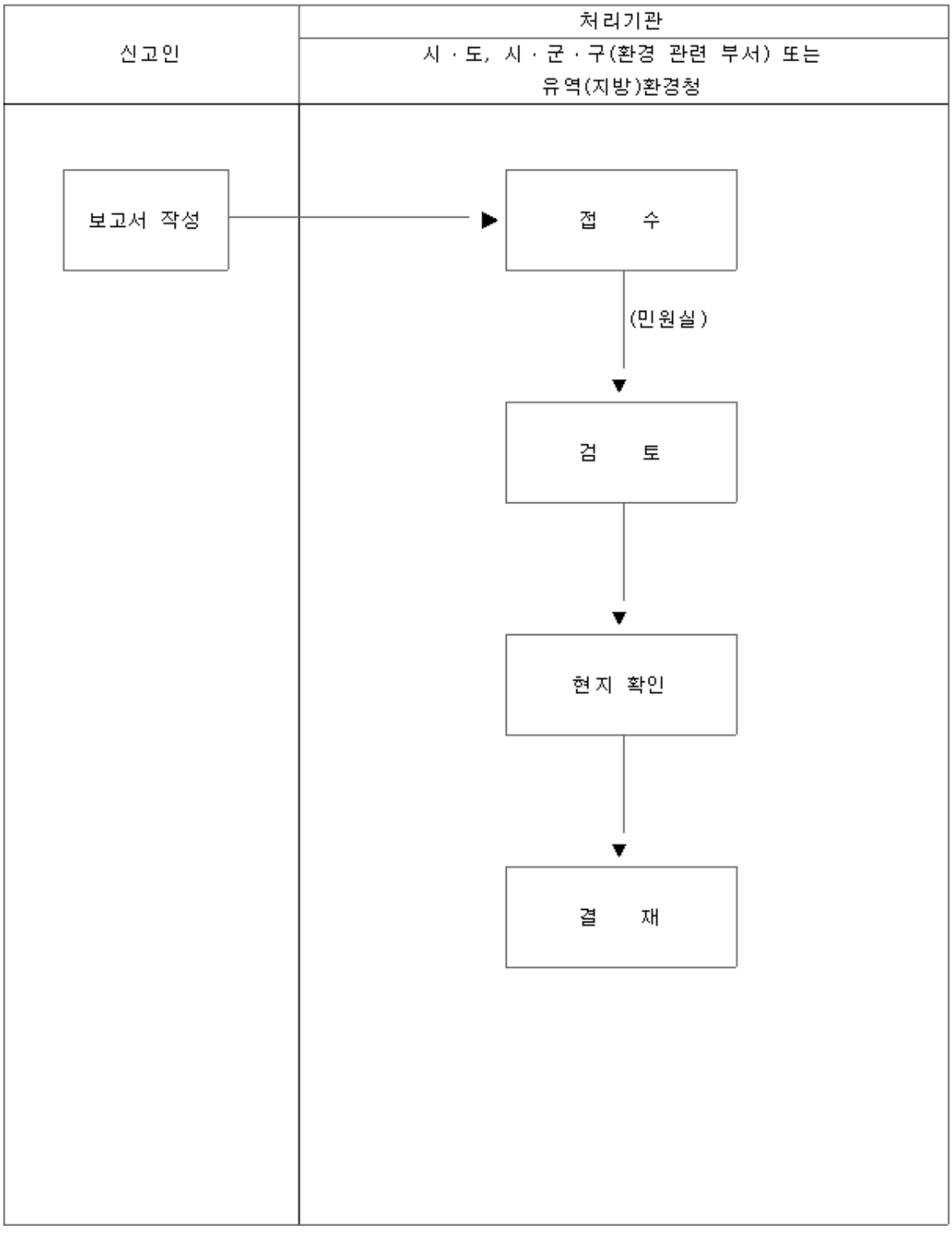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 확 정 배 출 량 명 세 서

| 제출인 | ① 사업장명 | | ② 종 류 | 종 |
|---|---|---|---|---|
| | ③ 대 표 자 | | | |
| | 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⑥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오염배출량 산정

| 구 분 |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합계 | 평균 |
|---|---|---|---|---|---|---|---|---|---|---|---|---|---|---|---|---|---|---|---|---|---|---|---|
| 배출농도(㎎/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화 학 적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일일유량(㎥)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kg)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화 학 적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⑦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조정산정

| 구 분 | |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 | | |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 | 합 계 | 평 균 |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 출 량 |
|---|---|---|---|---|---|---|---|---|---|---|
| |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배출농도(㎎/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 | | | | | |
| | 화 학 적 산소요구량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 일일유량(㎥) | | | | | | | | | | |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kg)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 | | | | | |
| | 화 학 적 산소요구량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⑧ 확 정 배 출 량 산 정

| 구 분 |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kg) | 부과기간 중의 총 조업일수 | 확정배출량(kg) |
|---|---|---|---|
| 유기물질 | | | |
| 부유물질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 )년도 (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횟수 또는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횟수가 기재하는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3. ⑥의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4. 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농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5. ⑦의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에는 ⑦의 "평균"란의 수치를 적습니다.
6. ⑦의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적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7. ⑦의 "평균"은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란의 각각의 수치와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8. ⑦의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평균"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9. ⑦의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은 "평균"란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합니다.
10. ⑧의 "유기물질"란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 ⑦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이 큰 값을 적습니다.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수질)

## 1. 일반현황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2. 초과부과금 부과산정명세

| 오염 물질명 | 배출농도 (㎎/L) | 기준농도 (㎎/L) | 초과농도 (㎎/L) | 일일유량 (L/일) | 종류 | 지역 구분 | 부과기간 (일) |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
| | | | | | | | | |

○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수질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_____원(A)

나. 배출허용기준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일일유량×초과농도×$10^{-6}$) × 부과기간

_____㎏(B)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농도÷기준농도×100=( )% _____(C)

라. 지역별 부과계수 _____(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_____(E)

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_____(F)

사. 사업장 규모별 합산금액 _____원(G)

아. 초과부과금=(A)×(B)×(C)×(D)×(E)×(F)+(G) _____원

가산금: 초과부과금 × 5/100 _____원

납기후 부과금: 초과부과금 + 가산금 = _____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3. 기본부과금 부과산정 명세

| 수질오염 물질명 | 평균배출농도 (㎎/L)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 지역구분 | 조업일수 | 종류 |
|---|---|---|---|---|---|
| | | | | | |

○ 부과기간: ~ ( 일) (기간 중 미조업일수: 일)

가. 수질오염물질 ㎏당 부과금액 _____원(A)
나. 기준이내 배출량(일일평균기준이내 배출량×조업일수) _____㎏(B)
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계수: (배출농도-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 100 = ( )% _____(C)
라. 지역별 부과계수 _____(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_____(E)
바. 사업장별 부과계수 _____(F)
사. 기본부과금 = (A)×(B)×(C)×(D)×(E)×(F) _____원
가산금: 기본부과금 × 5/100 _____원
납기후 부과금: 기본부과금+가산금 = _____원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시행일자 발신 (인)
받 음
제 목 배출부과금 □ 조정부과 □ 환 급 통지서

**□조정부과 □환 급 내역**

| ①계 | ②부과금 | ③미 수 부과금 | ④□조정 □환급 부과금 | ⑤□조정부과 □환 급 결정일자 | ⑥□수급 □환급 은행 및 계좌번호 | ⑦기타 |
|---|---|---|---|---|---|---|
| | | | | | | |

⑧ □조정부과 □환 급 사유

⑨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 조정부과 □ 환 급 함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받음란에는 □조정부과 □환급 대상사업자(납부의무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2. □조정부과 □환급 사유란에는 □조정부과 □환급 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배출부과금 과다납입금의 환급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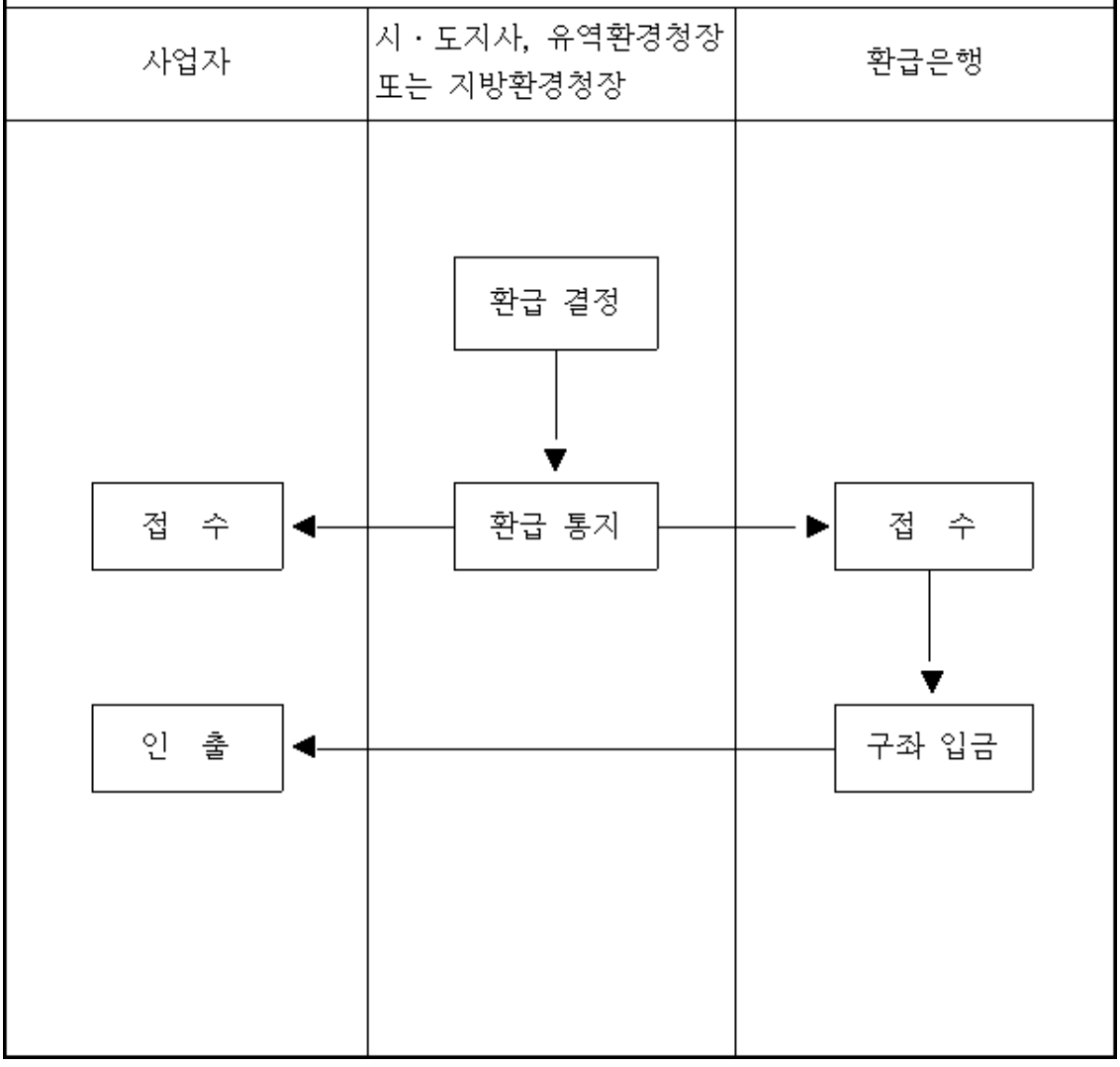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 | 처리기간<br>10일 |
|---|---|---|---|
| 신청인 | ① 사업장명 | | |
| | ② 대 표 자 | | |
| | ③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당 초 부 과 명 세

| ④ 납부통지서 수령일 | ⑤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⑥ 부과일시 | ⑦ 부과금액 | ⑧ 납부기한 |
|---|---|---|---|---|
| | | | | |

| ⑨ 환급금 수령 계좌번호 | |
|---|---|
| ⑩ 조정신청 사유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 수수료<br>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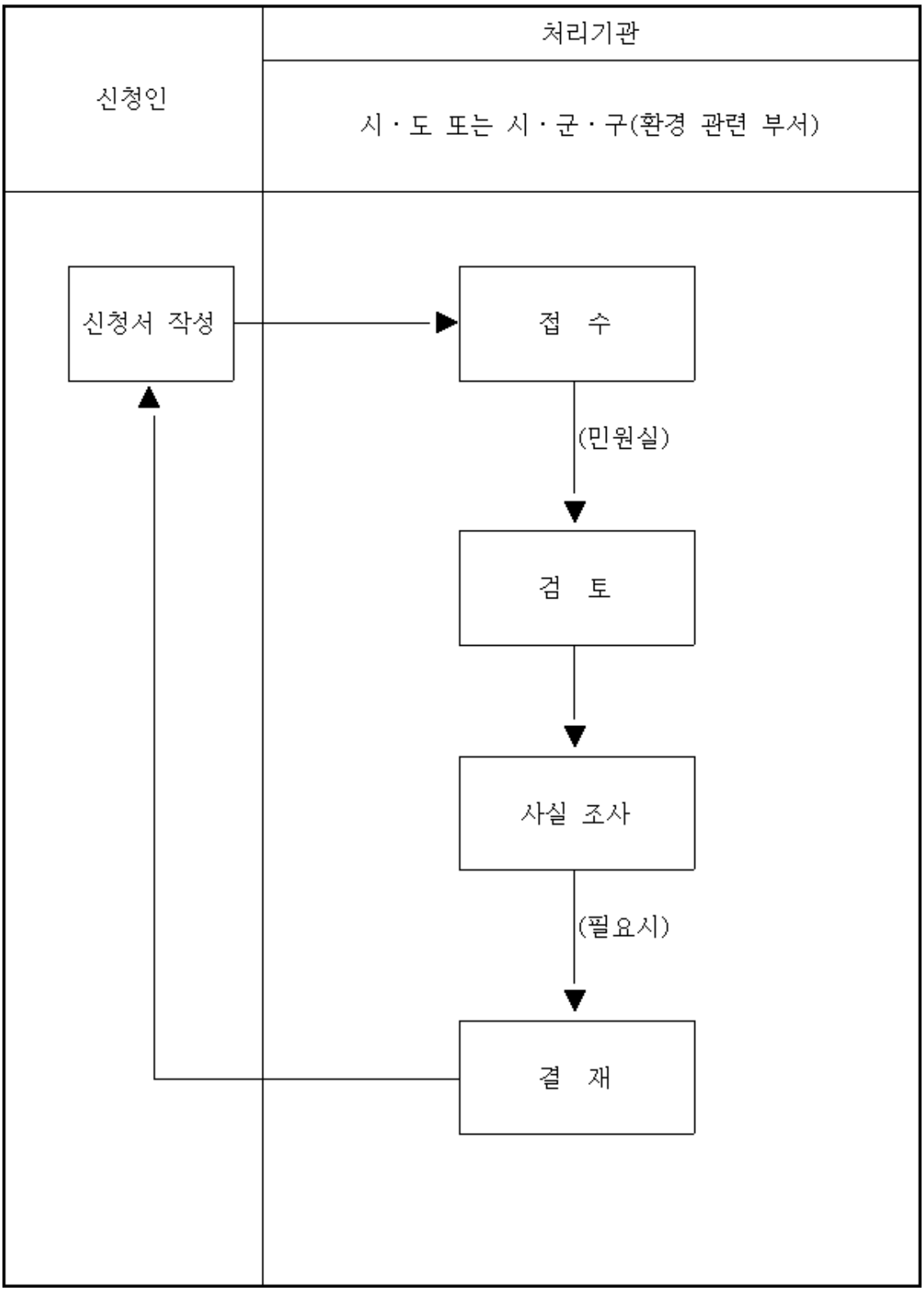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 처리기간 5일 |
|---|---|

| 납부의무자 | | |
|---|---|---|
| | ① 업 소 명 | |
| | ② 대 표 자 | |
| | ③ 주소 또는 거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⑤ 징수유예 신청사유 | |
|---|---|

| ⑥ 부과일자 | ⑦ 부과기간 | ⑧ 부과금액 | ⑨ 유예신청기간 | ⑩ 유예신청금액 |
|---|---|---|---|---|
| | | | | |

⑪ 분 납 신 청 사 항

| 분납일자 | | 분납금액 | 분납일자 | | 분납금액 | 분납일자 | | 분납금액 |
|---|---|---|---|---|---|---|---|---|
| 1차 | | | 5차 | | | 9차 | | |
| 2차 | | | 6차 | | | 10차 | | |
| 3차 | | | 7차 | | | 11차 | | |
| 4차 | | | 8차 | | | 12차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br>1. 납부통지서 1부<br>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3.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 수수료<br>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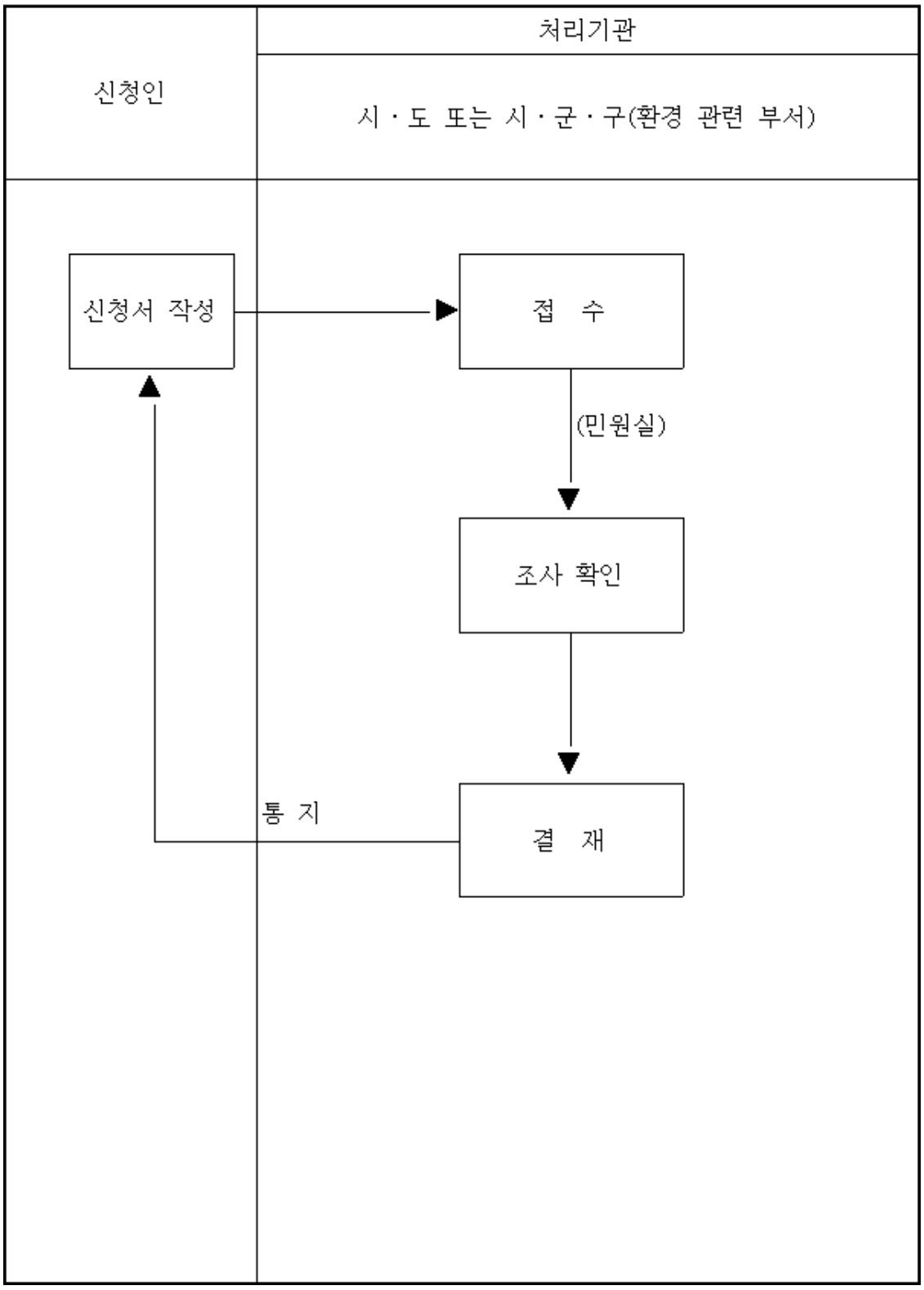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 개 선 ☐ 조업정지 ☐ 사용중지 ☐ 폐 쇄 명령 이행보고서 | 처리기간 |
|---|---|---|
| 제 호 | | 4일 (검사기간 제외) |

| 보고인 | | |
|---|---|---|
| | ① 사업장명 | |
| | ② 대 표 자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⑤ 사업종류 | | |
| ⑥ 폐수배출시설명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명 | | |
| ⑦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사항 | | |
| ⑧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 이행일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 개 선
☐ 조업정지
☐ 사용중지
☐ 폐 쇄

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없습니다. | 수수료 |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14.1.29>

(뒤 쪽)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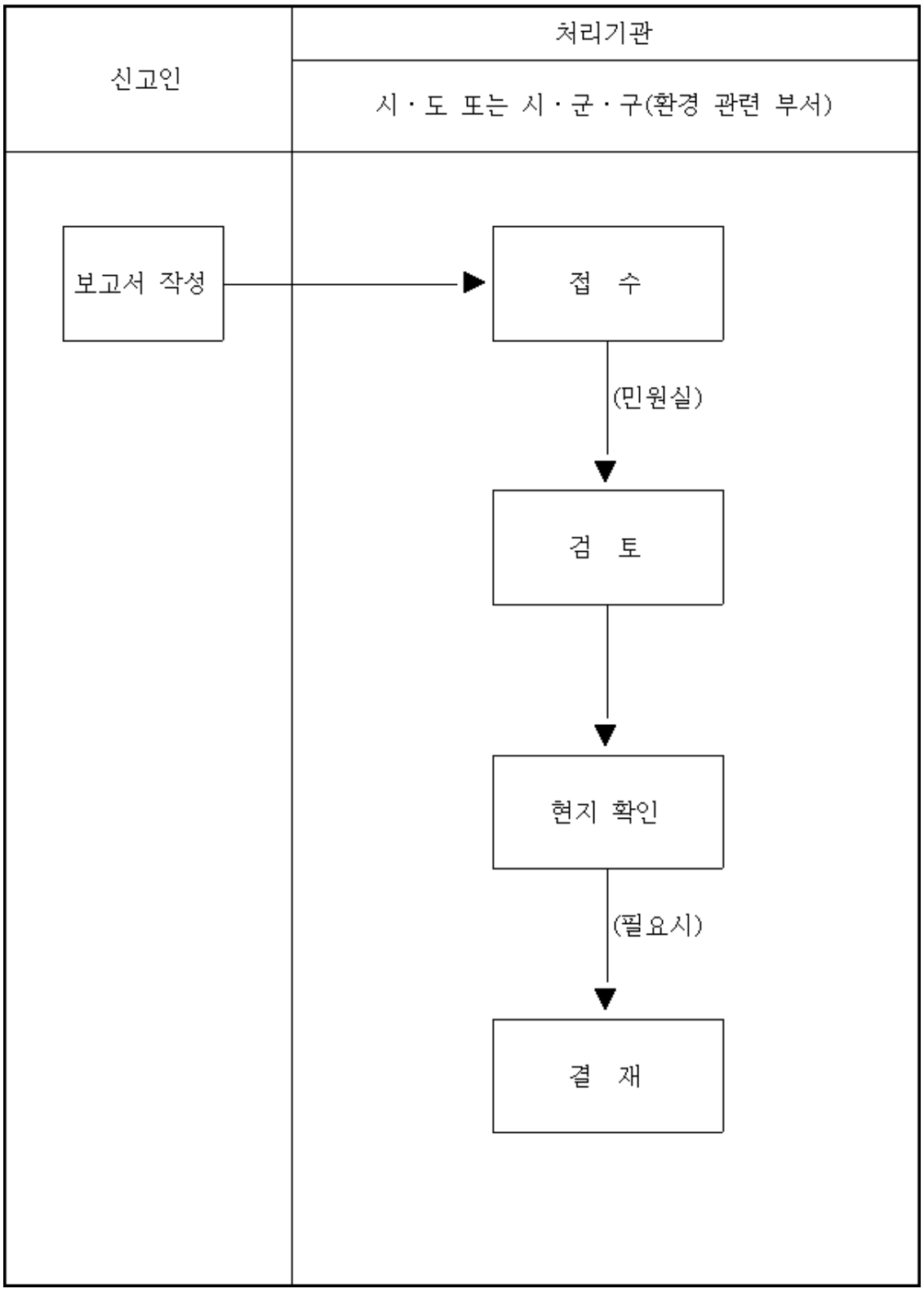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table>
<tr><td colspan="7">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서</td><td>처리기간<br>60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① 기관명</td><td colspan="2"></td><td>② 대표자</td><td colspan="2"></td><td></td></tr>
<tr><td>③ 소재지</td><td colspan="6">(전화: )</td></tr>
<tr><td rowspan="5">사업계획</td><td>④ 사업장 위치</td><td colspan="2"></td><td>⑤ 용도지역</td><td colspan="2">지역 지구</td><td></td></tr>
<tr><td rowspan="2">사업내용</td><td>⑥사업종류</td><td>⑦ 사업규모 및 부지면적</td><td>⑧ 사업비</td><td>⑨ 예상원인자</td><td>⑩사업비부담자</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시행기간</td><td colspan="2">⑪ 착공 예정일</td><td colspan="3">⑫ 준공 예정일</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r>
<tr><td colspan="8">「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br><br>년 월 일<br><br>신청인 (서명 또는 인)<br><br>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7">※ 구비서류: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td><td>수수료<br>없 음</td></tr>
</table>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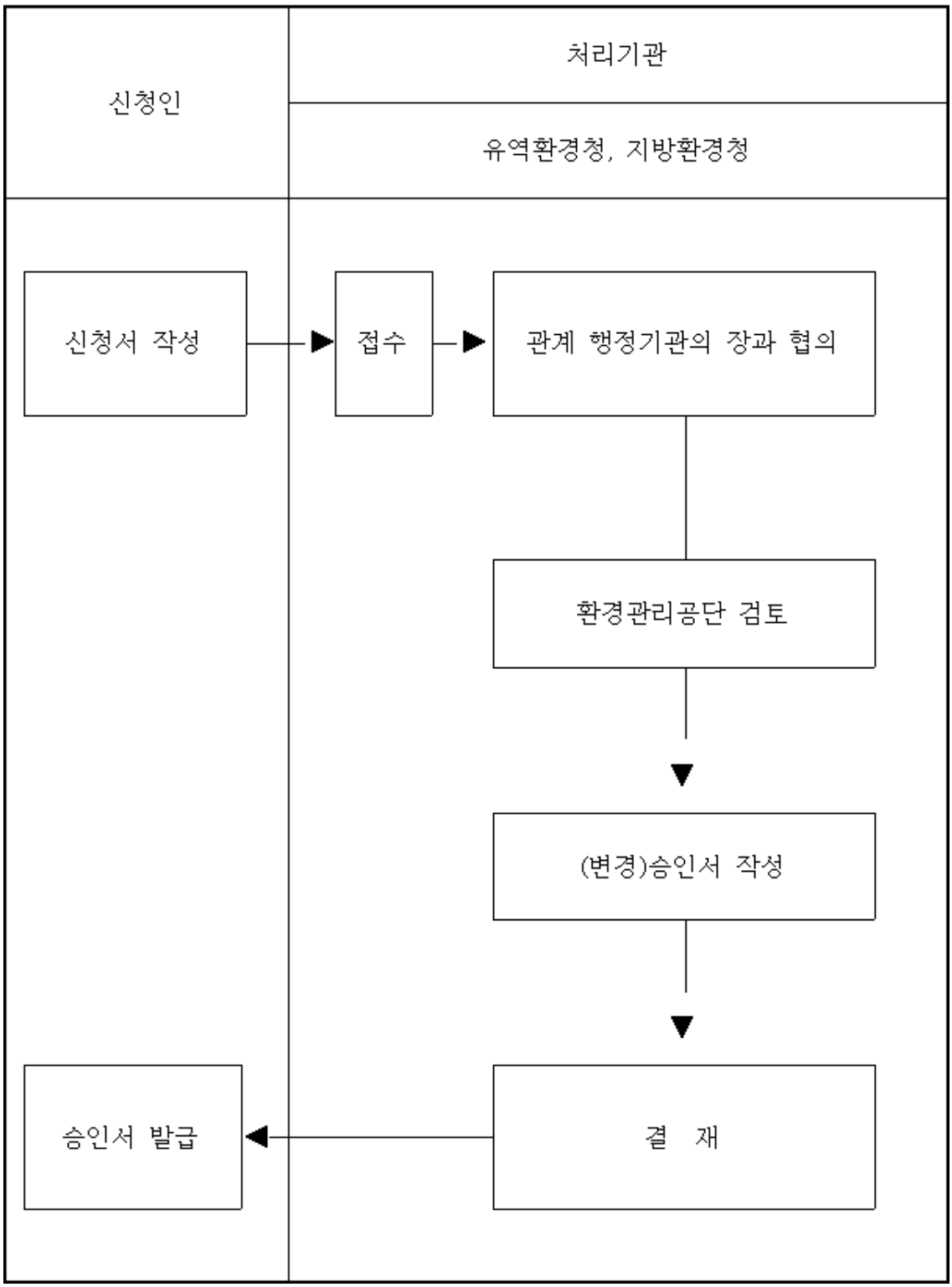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 | |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① 기관명 | | ② 대표자 | | |
| | ③ 소재지 | (전화: ) | | | |
| 사업내용 | ④ 사업장 위치 | | ⑤ 사업종류 | 지역 지구 | |
| | ⑥ 총사업비 | | ⑦ 시행기간 | | |

| 비용부담계획 | ⑧ 원인자비용 부담총액 | ⑨ 원인자 유형별 사업체수 | ⑩ 원인자 선정 대상 지역 | ⑪ 원인자 선정 기준 | ⑫ 비용부담금액 결정기준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 서류 1부

| 수수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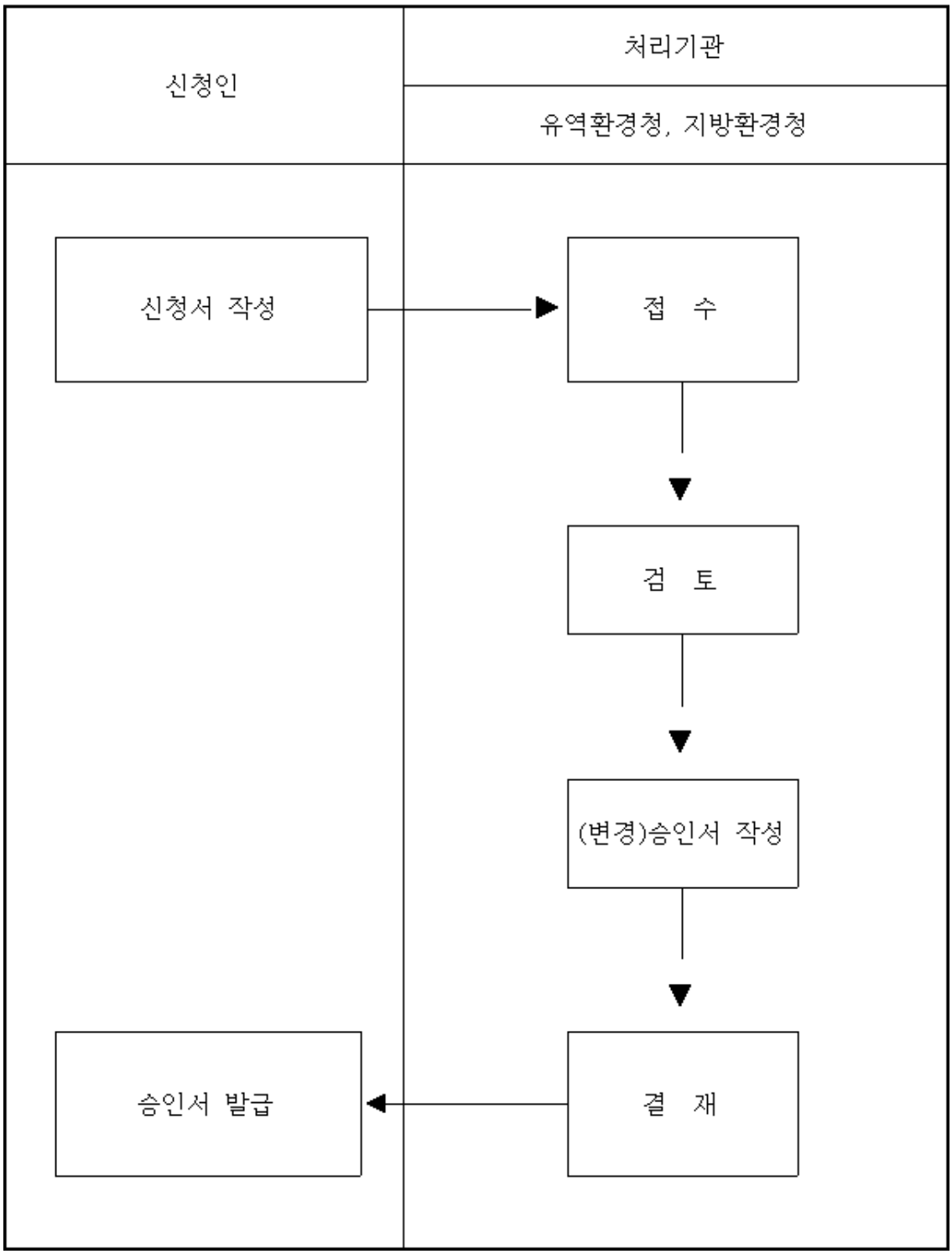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 | | | | | 처리기간<br>뒤쪽참조 |
|---|---|---|---|---|---|---|
| 신고인 | ① 상호<br>(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② 성명(대표자) | | | | |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
| 신고내용 | 공통 | ⑤ 사업명 또는 사업종류 | (분류번호: ) | | | |
| | | ⑥ 영향 하천·호소 및 해양의 명칭 | | ⑦ 사업승인(허가 등)기관 | | |
| | 개발사업 | ⑧ 공사개시(예정)일 | 년 월 일 | ⑨ 사업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 | ⑩ 총 사업면적 | ㎡ | ⑪ 개발면적 | ㎡ | |
| | | ⑫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 공사 중 ㎡ | ⑬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 공사 중 | |
| | | | 공사 후 ㎡ | | 공사 후 | |
| | 사업장 | ⑭ 가동개시(예정)일 | 년 월 일 | ⑮ 부지 총면적 | ㎡ | |
| | | ※ 강우노출 면적 | ㎡ | ※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 | |
| | 공통 | ※ 저감시설 종류 | ※ 규모 또는 용량 | | ※ 예상처리효율(%) | |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수수료 |
|---|
| 없음 |

1.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위치도를 포함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 요령 및 기준

1. 신고내용란 중 개발사업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적고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고, 사업장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2. ⑫란은 공사 중, 공사 후의 토지이용 형태별 면적을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3. ⑬란은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 중, 공사 후에 관리가 필요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모두 기록합니다.
4. ⑭란은 강우에 노출되어 비점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정, 야적시설 등의 면적을 기록합니다.
5. ⑮란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모두 기록합니다.
6. ⑯란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중, 공사 후의 강우유출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구분하여 모두 기록하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모두 기록하며,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종류가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7. ⑰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에서 제시한 설계규모 및 용량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8. 구비서류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저감시설의 예상처리효율, 산정근거 및 기준강우강도 등 설계인자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9. 처리기간: 10일(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 신고번호<br>제 호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 | |
|---|---|---|---|
| ① 사업장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⑤ 사업명 또는 사업종류 | (분류번호: ) | | |
| ⑥ 영향하천·호소 및 해양명의 명칭 | | | |
| 신고사항 | 개발사업 | ⑦ 공사개시(예정)일 | | ⑧ 사업준공(예정)일 | |
| | | ⑨ 총사업 면적 | ㎡ | ⑩ 개발면적 | ㎡ |
| | | 공사중 | ⑪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 ㎡ | ⑫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 |
| | | | ⑬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 ㎥ | ⑭ 예상처리효율 | % |
| | | 공사후 | ⑮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 ㎡ | ⑯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 |
| | | | ⑰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 ㎥ | ⑱ 예상처리효율 | % |
| | 사업장 | ⑲ 가동개시(예정)일 | | ⑳ 부지 총면적 | ㎡ |
| | | ㉑ 강우노출면적 | ㎡ | ㉒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 |
| | | ㉓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 ㎥ | ㉔ 예상처리효율 | % |
| | ㉕ 비점오염 발생·유출 흐름도: 따로 붙입니다. | | | | |
| | ㉖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명세 및 도면: 따로 붙입니다.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변경사항 >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 | | 처리기간 5일 |
|---|---|---|---|
| 신고인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 |
| | ② 성명(대표자) | |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변경사항 | | 변경 전 | 변경 후 |
| 공통 | ⑤ 상호 | | |
| | ⑥ 대표자 | | |
| | ⑦ 사업명 또는 사업종류 | | |
| | ⑧ 영향 하천·호소 및 해양의 명칭 | | |
| | ⑨ 기타 | | |
| 개발사업 | ⑩ 총사업면적 | ㎡ | ㎡ |
| | ⑪ 개발면적 | ㎡ | ㎡ |
| | ⑫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 ㎡ | ㎡ |
| | ⑬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 | |
| | ⑭ 저감시설 종류, 위치, 용량 | | |
| | ⑮ 저감시설 예상처리효율 | % | % |
| 사업장 | ⑯ 공장부지 총면적 | ㎡ | ㎡ |
| | ⑰ 강우노출면적 | ㎡ | ㎡ |
| | ⑱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 | |
| | ⑲ 저감시설 종류, 위치, 용량 | | |
| | ⑳ 저감시설 예상처리효율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증명서 1부<br>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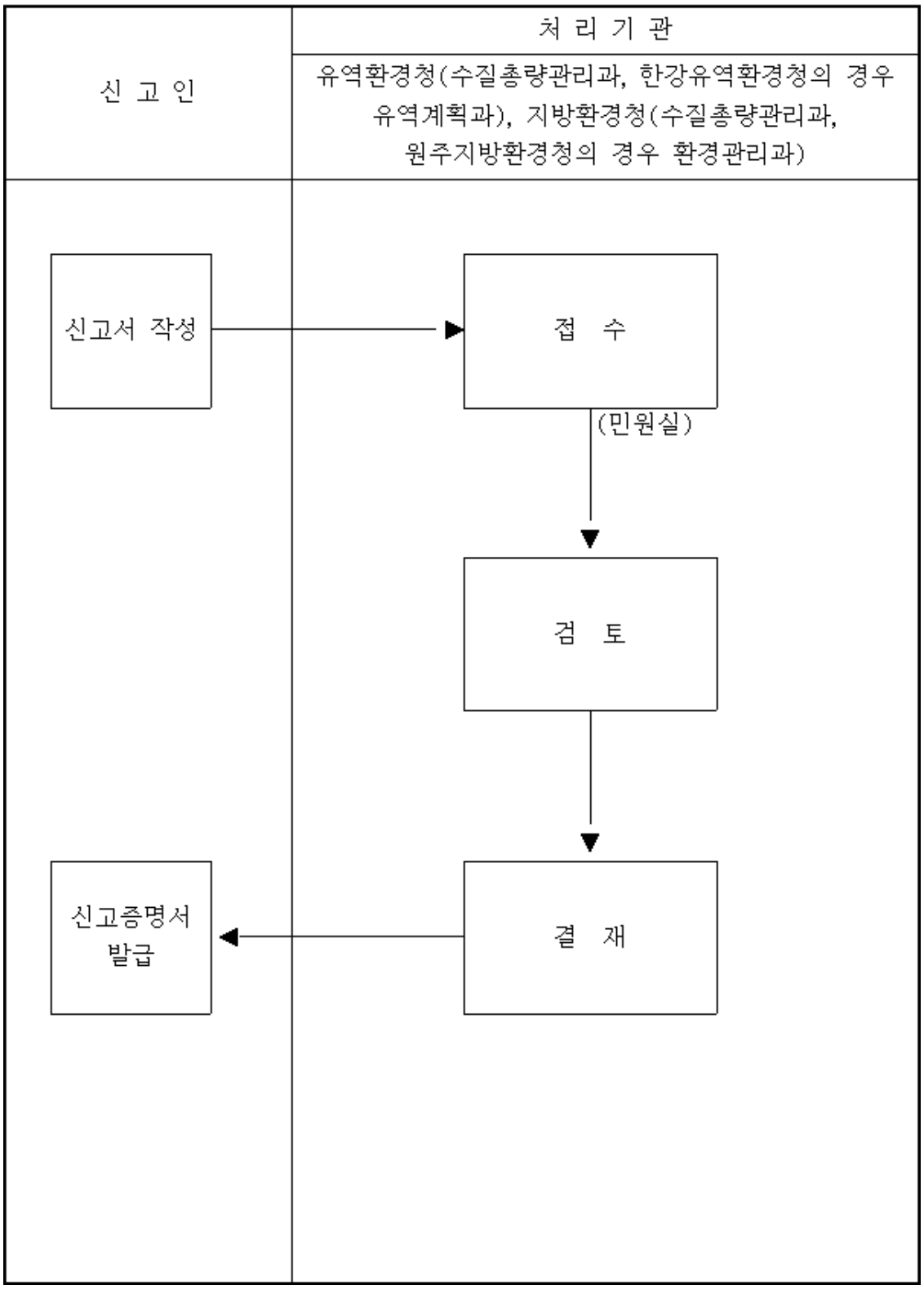

[별지 제36호서식]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

| 년.월.일 | 강우량 | 강우 기간 | 강우 전·후 저감시설 관리·운영 내용 등 | 결재 | | |
|---|---|---|---|---|---|---|
| | | | | 관리 담당자 | 부서장 |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및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 처리기간 |
|---|
| 4일 |

| | | | | | | | | |
|---|---|---|---|---|---|---|---|---|
| 신고인 | 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② 대 표 자 | | | | |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 | |
| 신고내용 | 공통 ⑤ 사업종류 | | ⑥ 영향 하천·호소 및 해양의 명칭 | | | | | |
| | 공통 ⑦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 년 월 일 | ⑧ 사업개시예정일 | 년 월 일 | | | | |
| | 공통 ⑨ 사업승인(면허)일 | | ⑩ 사업승인(면허)기관 | | | | | |
| | 공통 ⑪ 수질오염저감시설 | | | | | | | |
| | 양식어장 ⑫ 면허(신고) 면적 | ㎡ | ⑬ 사용 면적 | ㎡ | ⑭ 수중 용적 | ㎥ | ⑮ 양식수 | 최대 및 최소 마리~ 마리 |
| | 양식어장 ⑯ 면허기간 | | ⑰ 양식어종 | | ⑱ 사료먹이량 | | | kg/일 |
| | | | | | ⑲ 먹이횟수 | | | 회/일 |
| | 골프장 ⑳ 홀수 | | ㉑ 사업장총면적 | | ㎡ | | | |
| | 골프장 ㉒ 등록일 | | ㉓ 조정지저장능력 | | 개소 ㎥ | | | |
| | ㉔ 기타 | 설치 시설명 | 규모 | 시설수 | 오염저감시설 | 규모 | 시설수 | |
| | | |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br>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br>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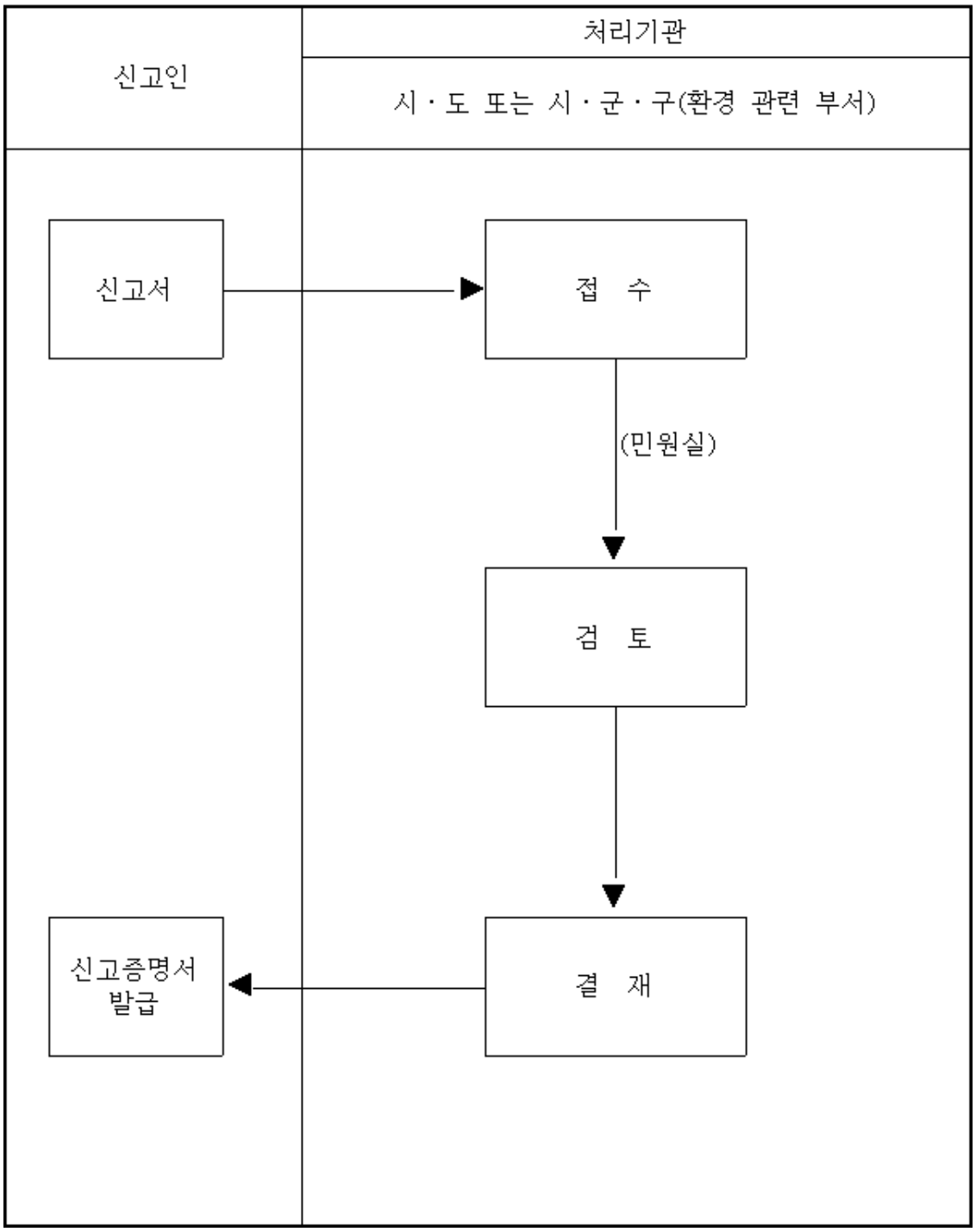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 신고번호<br>제 호 |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 | | | | |
|---|---|---|---|---|---|---|
| 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② 대 표 자 | | | | | | |
| ③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④ 사업종류 | (주생산품: ) | | | | | |
| ⑤ 면허(승인)기간 | | | ⑥ 사업시작(예정)일 | | | |
| 신고사항 양식어장 | ⑦ 시설면적 | ㎡ | ⑧ 면허(허가·신고)면적 | ㎡ | | |
| | ⑨ 수중용적 | ㎡ | ⑩ 호소·하천 및 해양의 명칭 | | | |
| 골프장 | ⑪ 총사업장의 면적 | ㎡ | ⑫ 홀수 | 홀 | | |
| | ⑬ 조정지 | 개소 (총 저장능력: ㎥) | | | | |
| 그 밖의 시설 | ⑭ 시설명 | | ⑮ 시설규모(수) | ㎡( ) | | |
| | ⑯ 약품사용량 | ㎏/일 | ⑰ 용수량 | ㎥/일 | ⑱ 폐수량 | ㎥/일 |
| ⑲ 수질오염 저감시설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경사항>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table>
<tr><td>신고번호<br>제 호</td><td colspan="6">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카드</td><td>신고일자</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 rowspan="3">신고인</td><td colspan="2">① 사업장명</td><td colspan="5">(사업자등록번호: )</td><td colspan="3">⑩ 특정시설 배치도</td></tr>
<tr><td colspan="2">② 대 표 자</td><td colspan="5"></td><td colspan="3" rowspan="8"></td></tr>
<tr><td colspan="2">③ 주 소</td><td colspan="5">(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3">④ 사업장 소재지</td><td colspan="5">(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3">⑤ 업 종</td><td colspan="2"></td><td>⑥ 면허(승인) 기관</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⑦ 양식어장</td><td>면허(신고) 면적</td><td>시설 면적</td><td>수중 용적</td><td>면허 기간</td><td>양식 어종</td><td colspan="2">1일 먹이량 및 횟수</td></tr>
<tr><td></td><td></td><td></td><td>부터<br>까지</td><td></td><td colspan="2">kg/일<br>회/일</td></tr>
<tr><td rowspan="2">⑧ 골프장</td><td>면적</td><td>사업장 면적</td><td>조정지 용량(㎥)</td><td>사업 승인 일자</td><td colspan="2">등록 일자</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 개소)</td><td>년 월 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⑨ 기타 시설</td><td colspan="2">시설명</td><td>시설 규모(수)</td><td colspan="2">폐수발생량</td><td>수질오염물질 발생량</td><td rowspan="2">⑪ 수질오염 저감시설 및 저감 방법</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td><td>( )</td><td colspan="2">㎥/일</td><td>kg/월</td></tr>
</table>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⑫ 사용원료·사료·약품·농약 또는 그 밖의 오염원인 물질사용량(연간) | | | | ⑭ 관리내용 및 처분내용 | |
|---|---|---|---|---|---|
| 품명 | 사용량 (㎏) | 품명 | 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 | | 처리기간 4일 |
|---|---|---|---|
| 신고인 | 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⑤ 변경사항 | | 변경 전 | 변경 후 |
| 공통 | 상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양식어장 | 면허기간 | | |
| | 면허면적(㎡) | | |
| | 사용면적(㎡) | | |
| | 수질오염저감시설 | | |
| 골프장 | 규모(㎡) | | |
| | 조정지 | | |
| 그 밖의 시설 | 설치시설 | | |
| | 수질오염저감시설 | | |
| | 그 밖의 변경내용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 |
|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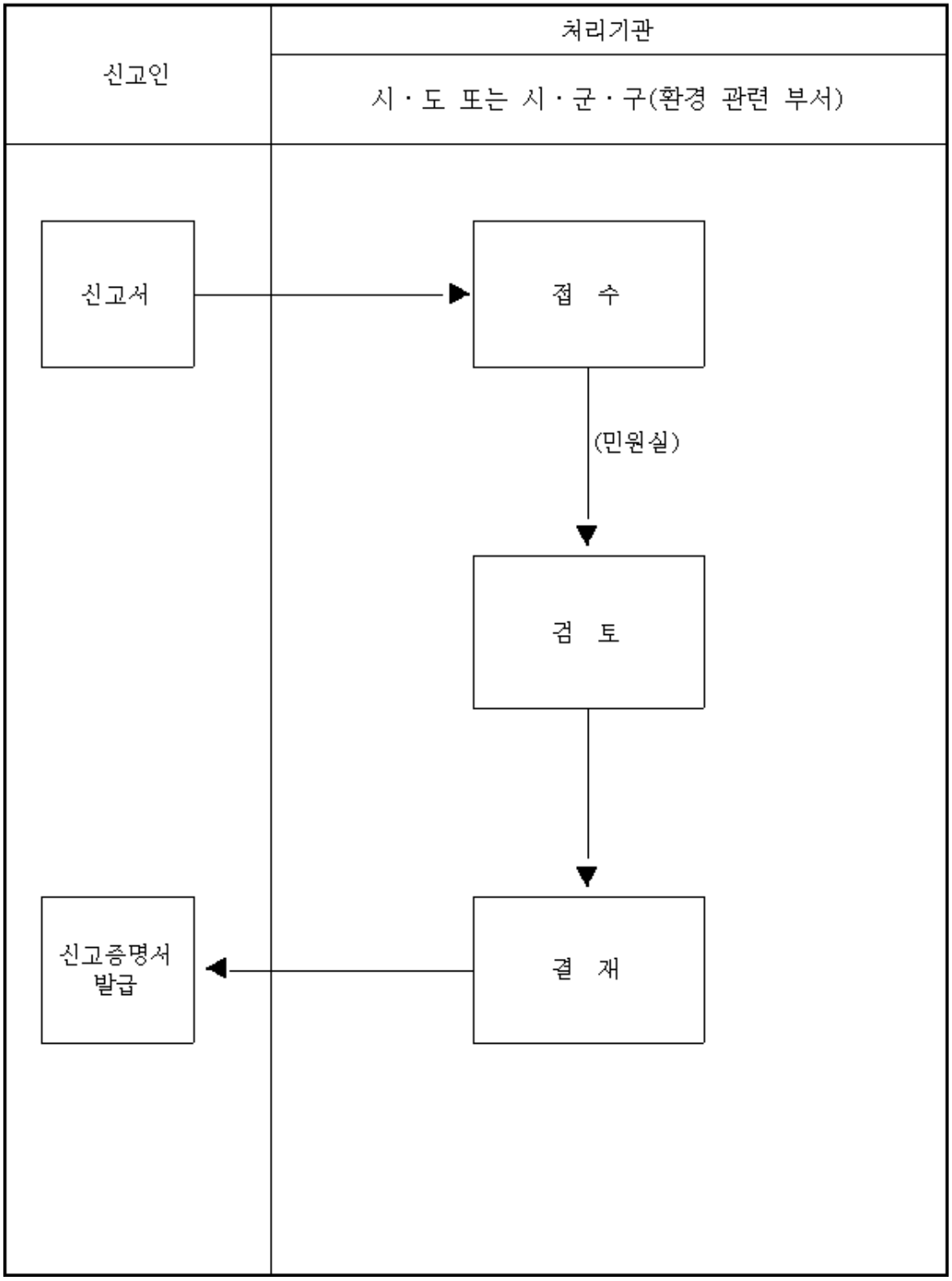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2.7.5>

# 폐수 [ ] 수탁처리업 [ ] 재이용업 등록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 | |

| | | | |
|---|---|---|---|
| 신청인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착공일 | 년 월 일 | 설치완료일 년 월 일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재이용시설

| 시설명 | 규격 | 대수 | 시설명 | 규격 | 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처리대상 폐수 | | 처리능력 | ㎥/일 |
|---|---|---|---|
| 처리방법 | | | |

| 시설명 | 규격 | 대수 | 시설명 | 규격 | 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폐수운반방법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에 따라 [ ] 폐수 수탁처리업 [ ] 폐수 재이용업 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br>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br>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br>4.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br>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도면 1부<br>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br>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1부 | 수수료<br>10,000원<br>(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br>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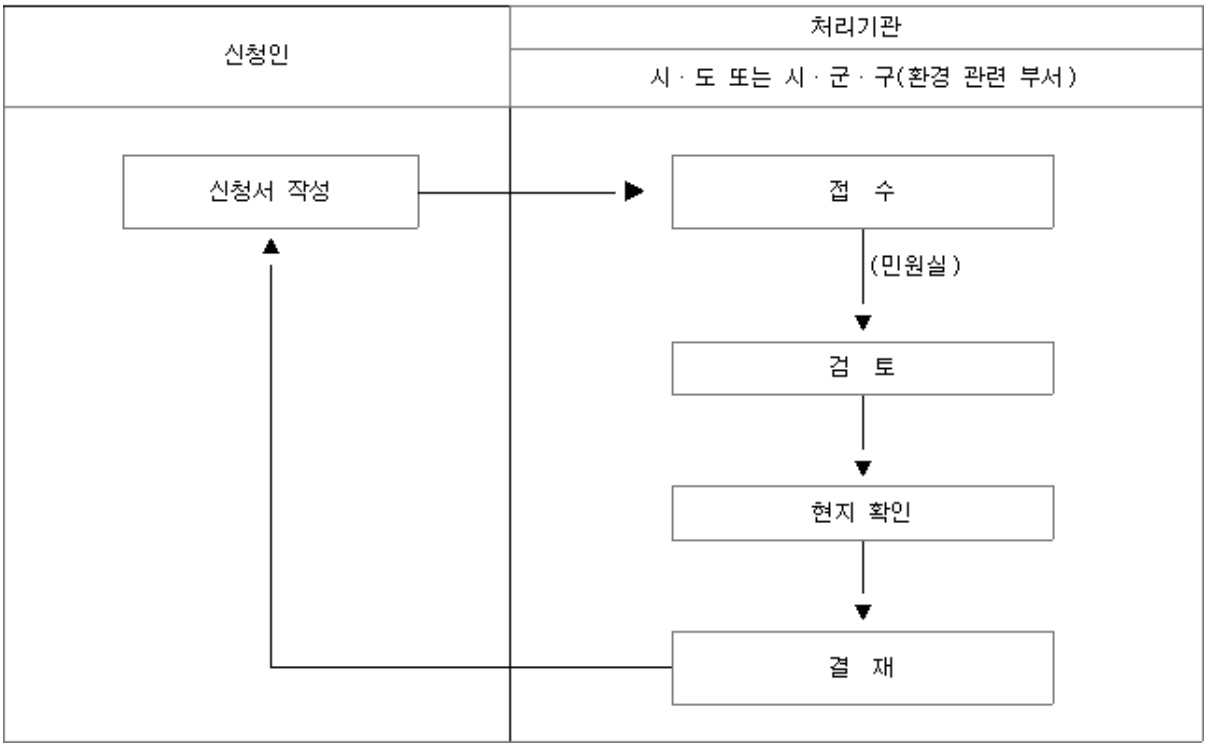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2.1.19>

(앞 쪽)

| 등록번호<br>제 호 | 폐수 □수탁처리업<br>□재이용업 등록증 | | |
|---|---|---|---|
| ① 상호(명칭) | | | |
| ② 성명(대표자) | | | |
| ③ 사무실 소재지 |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
| ⑤ 처리 및 재이용 대상 폐수 | | ⑥ 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능력 | ㎥/시간 |

⑦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 재이용시설

| 시설명 | 규격 | 대수 | 시설명 | 규격 | 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⑧ 수질오염방지시설

| 시설명 | 규격 | 대수 | 시설명 | 규격 | 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폐수처리방법 | |
| ⑩ 폐수운반방법 | |
| ⑪ 등록조건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4항에 따라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뒤 쪽)

< 변경사항 >

| 일 자 | 변 경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일 자 | 변 경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2.7.5>

# 폐수 [ ] 수탁처리업 [ ] 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등록번호 제 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 | | |
|---|---|---|---|
| 신청인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설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

변경등록명세

| 변경등록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7항에 따라 [ ] 폐수 수탁처리업 [ ] 폐수 재이용업 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등록증 원본<br>2. 변경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br>가. 폐수처리의 용량·방법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업계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br>나.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각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상호 변경 시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br>2. 상호 변경 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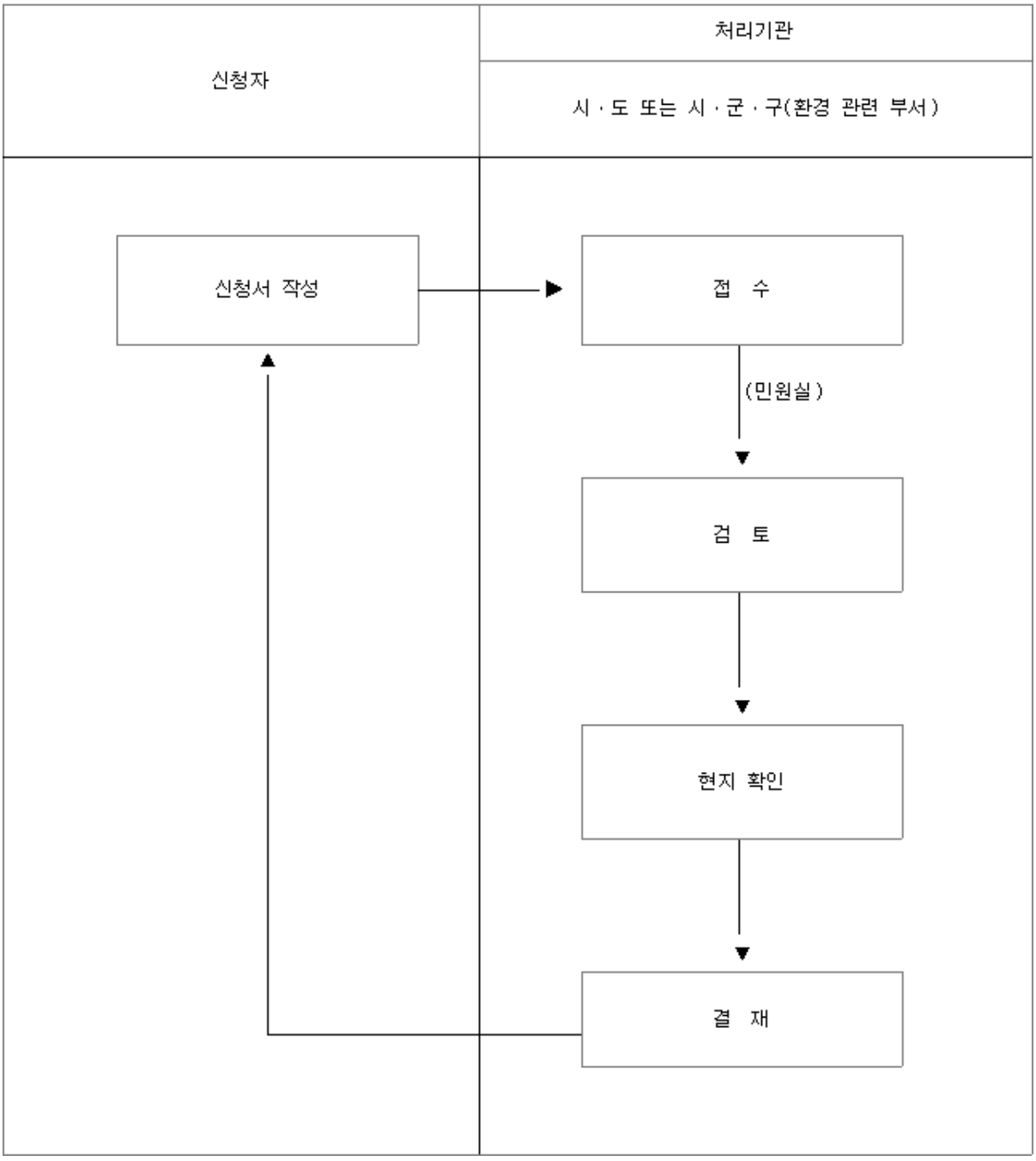

[별지 제44호서식]

| 일련번호<br>제 호 | 폐수위(수)탁 확인서 | | | |
|---|---|---|---|---|
| 위탁자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 ③ 대 표 자 | |
| | ② 소 재 지 | | ④ 전 화 번 호 | |
| 수탁자 | ⑤ 상호(사업장 명칭) | | ⑥ 대 표 자 | |
| | ⑦ 소 재 지 | | ⑧ 전 화 번 호 | |

| 구분 / 폐수종류(부호) | ⑨ 단 위 | ⑩ 수 량 | ⑪ 단 가 | ⑫ 금 액 | ⑬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 특기사항

| 폐수부호 | | | | |
|---|---|---|---|---|
| | H-1 도금산화계 | H-2 도금환원계 | H-3 도금혼합 | H-4 실험실 폐수 |
| | H-5 그 밖의 중금속 | A-1 폐산 | K-1 폐알칼리 | M-1 그 밖의 금속 |
| | P-1 사진현상 | P-2 사진정착 | P-3 사진세척수 | P-4 인쇄제판정착 |
| | P-5 인쇄제판현상 | P-6 인쇄제판세척수 | B-1 보일러세관(탈청) | |
| | B-2 보일러세관(중화) | G 귀금속 가공수 | | |
| | EX 그 밖의 폐수(⑭란의 특기사항에 폐수의 종류·성상 등을 적습니다)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마목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차량번호: 확인자: 수탁자 서명

운 전 자: 확인자: 위탁자 서명

1. 확인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폐수처리업자가 발행하고, 권마다 확인서 발행대장에 기록합니다.
2. 확인서는 2장을 작성하여 수탁자와 위탁자가 각 1장씩 보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